

제4판

구급차 관리·운용 안내

Guidelines for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Ambulance

2022. 5.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본 지침의 발간 연혁

● 제1판 (*14.6.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제4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급차 관련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

● 제2판 (*14.8.26)

1판 배포 이후 자주 제기된 질의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

※ 소방 구급차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 '119구급차 통보제 처리 지침'에 따름
(*14. 8. 14일 배포)

● 제3판 (*15.11.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허가 세부기준 보완

● 제4판 (*22.5.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타 법률 개정사항 반영, 주요 민원 질의사항 추가



C o n t e n t s \ 차례

I. 구급차의 개요	1
II. 구급차의 운전자	2
III. 구급차의 용도	4
IV. 구급차의 이송처치료	7
V.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및 운행연한	13
VI. 구급차의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21
VII. 기타 구급차의 의무설치 장비	31
VIII. 기타 구급차의 관리기준	42
IX. 구급차 운전자, 응급구조사 등의 준수사항	45
X. 구급차 운용 신고(통보)	56
XI.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62
XII. 구급차 운용상황 및 실태 점검	71

[붙임]

1. 구급차 부착용 이용안내(안)	73
2. 이송처치료 영수증 양식	74
3. 의약품 관리대장	75
4.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77
5.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제출방법	79
6.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91
7. 구급차 기준 등 점검표	92
8.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99
9. 재발급 신청서	100
10.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 개요	101
11. 시·도별 구급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104
12. 시·도별 구급차 신고 현황	105
13. 시·도별 응급환자이송업 현황	107

제4판의 주요 변경사항	
I. 구급차의 개요	1
• 구급차의 종류 세부설명 추가	
II. 구급차의 운전자	2
• 법률 현행화 및 법정 운전자 추가	
III. 구급차의 용도	4
• 구급차 용도 및 비용 관련 상세사항 보완	
IV. 구급차의 이송처치료	7
• 구급차 요검미터장치 의무장착 대상 보완, 관련 Q&A 내용 추가	
V.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및 운행연한	13
• 법률 현행화 및 문구 수정, 관련 Q&A 내용 추가	
VI. 구급차의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21
•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세부설명 추가	
VII. 기타 구급차의 의무설치 장비	31
• 법률 현행화 및 관리지침 개정사항 반영	
• 요검미터장치 검정 관련 내용 추가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문 예시 첨부	
VIII. 기타 구급차의 관리기준	42
• 법률 현행화	
IX. 구급차 운전자, 응급구조사 등의 준수사항	45
• 법률 현행화 및 문구 수정, 관련 Q&A 내용 추가	
X. 구급차 운용 신고(통보)	56
• 법률 현행화 및 문구 수정	
• 변경·말소신고 세부처리절차, 관련 Q&A 내용 추가	
XI.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62
• 법률 현행화 및 문구 수정	
• 구급차 자본기준 관련 상세내용 보완, 관련 Q&A 내용 추가	
XII. 구급차 운용상황 및 실태점검	71
• 구급차 운용상황 및 실태점검 세부설명 추가	
붙임	
• [붙임4]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양식 변경 및 작성방법 추가	77
• [붙임5] 출동 및 처치기록지 제출 방법 업데이트 및 Q&A 추가	79
• [붙임6]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91
• [붙임7] 구급차 기준 등 점검표 내 의료장비 및 의약품 관리 방법 추가	92
• [붙임8]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양식 변경	99
• [붙임9] 구급차 운용 재발급 신청서 양식 변경	100
• [붙임10]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 설명	101
• [붙임11] 시·도별 구급차 담당부서 및 연락처	104
• [붙임12] 시·도별 구급차 신고 현황	105
• [붙임13]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업 현황	107

I 구급차의 개요

정의

- 응급환자의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장비 등의 운반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

구급차 종류(응급의료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구급차는 크게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로 구분
 - (**특수구급차**)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 외관상 붉은색 표시
 - (**일반구급차**)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 외관상 녹색 표시
- 구급차 종류에 따라 환자 이송에 따른 이송처치료 기준, 구급차에 구비해야 하는 의료장비, 의약품 기준이 다르게 적용

※ 자동차등록증의 ‘차명’에 특수구급차(예시: 스타렉스특수엠블런스, 그랜드스타렉스특수구급차 등)로 기입이 되어있어도, 운용자가 이를 일반구급차로 운용하고자 하면 일반구급차의 도색 표시 기준 등에 맞도록 하여 일반구급차로 신고하고, 이를 일반구급차로 운용 가능
단, 일반구급차로 제작된 차량을 특수구급차로 신고하거나, 일반구급차로 신고 후 특수구급차의 비용 등을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됨

Ⅱ 구급차의 운전자

법정 운전자(응급의료법 제44조)

- 응급의료법에서 정한 운전자만 가능

구 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소방청 및 지역소방본부(119구급대), 보건소 등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 이송 목적에 활용하도록 하며, 환자 이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와는 별개로 별도의 허가절차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취득해야 함 - 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 가능
•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를 둘 수 있는 자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마사회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스키장업자, 4륜 자동차경주업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일정 조건의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가 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 사업주가 지원해야 항목 중에 “구급용구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구급차 운용 가능 ※ 사업장의 구급차 신고를 받는 데에 있어서는 의사, 간호사가 보건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동 사항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서 확인증을 발급 받아 오도록 함 ※ 사업장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는 보건관리자의 책임 하에 구급차 운용 본래의 목적에 맞게 관리·운용되어야 하며, 신고 이후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등 운용현황에 대해 기록 철지 (사업장 내 안전팀 등에서 목적 외 임의 사용이나 타 기관 대여, 이송업 운용 등은 불가)
•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대한구조봉사회(현재 서울시소관 비영리법인인 유일)

 관련 처벌 조항

- 이송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응급의료법 제60조제2항제3호)
- 응급의료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의 운전자 외의 자가 구급차를 운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응급의료법 제60조제4항제2호)
- 응급의료법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응급의료법 제60조제4항제3호)

Ⅲ 구급차의 용도

구급차 용도의 한정(응급의료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응급의료법에서 지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 금지

구 분	내 용
• 응급환자 이송	▶(용도)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이러한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에 어느 하나라도 부합되는 사람) ▶(비용) 응급의료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라 산정
•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 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용도) 이식수술 등을 위한 장기 이송 및 관련 의료진의 이송도 가능 ▶(비용) 구급차의 운용자와 이용자 간에 자율적 계약을 통해 산정
•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용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비용) 구급차의 운용자와 이용자 간에 자율적 계약을 통해 산정
•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 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용도) 현장이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례의 경우 장례식장으로의 이송이나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실시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지로의 이송 목적으로 사용 가능 ※ 관련 유권해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해석례 > “구급차”로 검색 「구급차로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법제처 13-0187)」 ▶(비용) 응급의료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라 산정
•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용도) 감염병 관리 등 지역보건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약 등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 ▶(비용) 응급의료법 제24조에서 정한 이송처치료 기준을 준수하되,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자율적 계약을 통해 산정

구 분	내 용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용도) 의료기관의 환자 소개·유인·알선 등을 위해 교통편의 제공 목적으로 사용 불가 ▶(비용) 응급의료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라 산정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용도) 체육행사, 지역행사 시 행사주체와의 별도 계약을 통해 구급차 대기 업무 수행 가능 ☞ 대기업무의 장소는 응급환자이송업체의 업무 지역을 벗어날 수 없으며(허가 외 지역 영업 시 응급의료법 제51조제1항 위반), 국토순례·체육경기 등 지역을 연속적으로 이동하며 이루어지는 행사는 지역별 업체 활용 ▶(비용) 구급차의 운전자와 이용자 간에 자율적 계약을 통해 산정(단, 대기 비용을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음)

관련 처벌 조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를 용도 외로 운용한 자에 대해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의 자동차등록 말소 요청 가능(응급의료법 제45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를 용도 외로 운용한 자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서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Q & A

1

사망자 이송은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인가요?

☞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는 “구급차를 이용하여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급차 용도(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3-0187, '13.6.18)

한편,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을 장례식장까지 이송은 가능할 것이나 장례식이 시작된 이후의 시신 이송(예: 장례식장 → 화장장 또는 매장지)은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구급차 등에 환자 이외에 보호자가 탑승할 수 있나요?

☞ 구급차 내의 보호자 동승 인원수에 대해 응급의료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응급의료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구급차에 탑승하게 되는 필수인력 외의 탑승인원은 환자의 중증도 및 상황(예: 소아 환자의 보호자 탑승 등) 등을 고려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탑승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구급차의 이송처치료

이송처치료의 부과(응급의료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여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음

※ 개조 등을 통해 구급차 운용자가 임의로 구급차 구분(일반, 특수) 변경 불가

- 구급차 이용과 관련하여 이송처치료 외의 추가비용* 청구 불가

* 부당 추가비용의 예: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의약품 비용,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

- 이송거리는 환자가 실제로 탑승한 거리에 따라 산정

※ 왕복, 시외 지역 등의 이유로 추가 비용 요구 불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

구분	요금의 종류	응급의료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 등	응급의료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30,000원	2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000원/1km	800원/1km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 비용)	15,000원	10,000원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75,000원	5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300원/1km	1,000원/1km
공통	할증요금(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를 의미함

이송처치료의 수취

- 구급차 내부에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요금미터를 사용하여 운행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의무장착 대상〉(40p 참고)

- 가. 응급의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급차(의료기관)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의 구급차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응급의료법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구급차(이송업자 및 비영리법인)
다. 2019년 9월 1일부터 위 호에 따른 구급차 운용자는 자동차 검사 시 요금미터장치 검정을 함께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응급의료법 제50조에 따라 시정·정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용카드 결제 요구 시 응하여야 함
※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의해 구급차 운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이송처치료 요금표(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를 구급차 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잘 보이는 곳에 반드시 부착(붙임1 참조)
- 이송처치료를 받을 시 반드시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별지 5호서식])을 발급하고 별도로 보관.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갈음할 수 있음(붙임2 형식)
* 이송처치료 요금 항목 (1. 운행거리, 2. 운행요금(기본, 추가, 할증요금), 3. 부가요금) 각각을 환자·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가 된 영수증과 함께 출력되는 매출전표(총액만 기재되는 형식의 매출전표 사용 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송처치료영수증 발급 필요)

※ 의료기관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인터넷 지도 등을 활용하여 이송처치료를 미리 산정 후 병원비에 합산하여 사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운행 시 미터기를 사용하여 나온 금액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불하도록 함

- 요양기관(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는 본인부담 100% 급여항목에 해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 급여의 본인부담) [별표 6] 1호 사목)

관련 처벌 조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이송처치료 외의 별도 비용을 받은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운용자에게 각각 면허·자격 등의 정지, 업무정지 처분 가능
(응급의료법 제55조제1항2호 및 제3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마목)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의료종사자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구급차 운용자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구급차를 운영하는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알선·유인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의료법」 제88조)

Q & A

1

한 대의 구급차로 복수의 환자 이송 시 이송처치료 산정 기준은?

☞ 구급차의 내부기준 및 의료장비 기준, 감염관리 및 이송 중 응급의료서비스 등을 고려할 때 구급차 한 대당 한 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대규모 재난 사고, 다수인이 포함된 사건·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구급차 한 대에 한 명 이상의 환자 이송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각각의 환자에게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A병원 소속 구급차가 외래진료를 위해 B병원으로 이송 후 대기하였다가 다시 A병원으로 돌아올 경우 이송처치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환자 이송시 이송처치료는 응급의료법 제2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등 이송시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외래진료를 위해 이동 후 대기하였다가 다시 A병원으로 돌아오는 경우 기본요금은 1번만 청구하고 실제로 환자가 탑승하여 움직인 거리에 대해 이송처치료를 받는 것은 합당하나, B병원에서 출발할 때 다시 기본요금을 받거나 대기비용을 받으면 부당 추가비용 수취에 해당합니다.

한편, 의료기관 A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B병원으로 갔다가 원래 소속으로 복귀하여 새로운 요청과정을 거쳐 동일한 응급환자가 이전 이송이 종료된 장소에서 다시 탑승하였을 경우 별도 행위로 간주하여 기본 요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3

어떤 환자가 부산의 ○○응급환자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부산(자택) → 서울(외래) → 부산(자택) 으로 이동하였다면 요금은? 이 경우 통행료는?

☞ 부산 출발 → 서울병원에서 대기 → 다시 부산으로 귀가하면서 기본요금은 1번만 청구하고 실제로 환자가 탑승하여 움직인 거리에 대해 이송처치료를 받는 것은 합당하나, 서울에서 출발할 때 기본 요금을 다시 한번 받거나 대기비용을 받으면 허가지역 외 영업 또는 부당 추가비용 수취에 해당합니다.

☞ 통행료 역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급차는 「유료도로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의해 구급차는 “통행료 납부 100% 감면” 이므로 각 시·도를 통해 “긴급면제카드”를 한국도로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신고필증, 허가필증 발급 구급차에 한해 신청 가능)

4

병원 구급차 내 요금미터장치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였더라도 이송처치료를 반드시 환자에게 받아야 하나요?

☞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를 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를 청구하면 이는 본인 부담률 100% 급여항목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별표 6] 1호

사. 응급의료법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및 응급 의료수가 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다만, 본문에 따른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응급의료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아울러 「의료법」 제27제3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의 영리 목적 소개·유인·알선 행위는 금지하고 있어 이송처치료 미청구 가능 여부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한계 안에서 구체적인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대법원 판례 (2004도5724) 「의료법」 위반

-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3항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고, 위 조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이다.
-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응급환자'의 경우, 발생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사전승인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처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판단에 의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긴급히 보내는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소개·알선 행위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 응급의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기준 제시

- 다만, 이 경우에도 구급차등의 운송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이송 등을 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응급의료법 제54조의2(유인·알선 등 금지)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송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알선하거나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55조제3항(벌칙)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응급환자임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정적·반복적으로 동일한 병원에 보내거나 환자·보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송처치료를 미청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료법 저촉 여지 높음

* 지리적, 의학적으로 처치가 가능한 병원이 인근에 1곳밖에 없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상급병원 또는 지역·권역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경우 등

- ② 거동불편자에게 이송처치료를 무조건적으로 받지 않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3항 저촉 가능성이 있으며,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 ③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나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환자 등의 교통편의 제공 등을 위한 단순 이송 목적 사용 불가

☞ 참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운영하는 구급차의 이송처치료 징수

-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할 경우는 이송처치료 수취 항목에 미해당.
-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보건기관이 수취하여야 할 이송처치료를 감면하는 경우는 관련 법규(「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의료기관 이송처치료 징수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응급의료과-6943호 (2014.12.22.))

V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및 운행연한

- 응급의료법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구급차 기준 규칙”)
-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시의 제한 및 운행금지)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경광등 및 사이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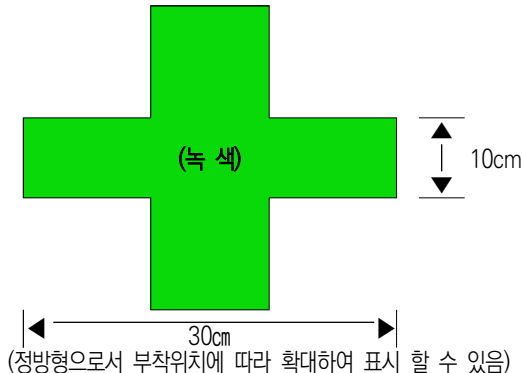
구급차의 형태(구급차 기준 규칙 제2조)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 지붕구조의 뒷개가 있을 것
 - 간이침대 또는 보조 들것을 실을 수 있는 크기의 문이 있을 것

구급차의 표시

(구급차 기준 규칙 제3조, 119구급차는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표시 가능)

- 바탕색은 흰색: 구급차 외관의 50%를 초과하는 면적이 흰색일 것
- 전·후·좌·우면 중 2면 이상에 녹색십자 표시
- 전·후·좌·우면의 중앙부위에 너비 5cm~10cm 띠를 가로로 표시
 - ※ 띠 색깔: 특수구급차-적색, 일반구급차-녹색



- 구급차 종별 글씨 표기
 - (특수구급차) 전·후·좌·우면 중 2면 이상에 붉은색으로 “응급출동” 표시
 - (일반구급차) 전·후·좌·우면 중 2면 이상에 붉은색 또는 녹색으로 “환자 이송” 또는 “환자후송” 표시(“응급출동” 표시는 할 수 없음)
- 좌·우면 중 1면 이상에 구급차를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표시
 - ※ 상기 구급차 종별 글씨 표기 및 운용기관 명칭·전화번호 표시면은, 해당 표기내용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흰색 바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등 기타 사항 및 광고 등을 기재하는 것은 「의료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심의절차에 따라야 함
- 구급차와 유사한 도색 또는 표지 사용의 금지(「도로교통법」 제42조)
 -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며,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등을 하거나 운전하여서는 안됨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구급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 구급자동차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광등, 사이렌 설치 가능
 - (경광등) 녹색(다른 색은 불가), 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 이상 2천5백칸델라 이하
 - (사이렌) 사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 20미터의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 120데시벨 이하일 것

구급차 내의 환자실 길이·너비·높이(구급차 기준 규칙 제4조)

- 구급차 환자실의 길이: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뒷문의 안쪽 면까지 250센티미터 이상
 - ※ 구급차 내에 운전석과 환자실을 구분할 수 있는 차체에 고정설치된 구획칸막이 설치 필요
(임시로 덧대놓은 각종 간이칸막이 등은 불인정)
- 간이침대 매트리스의 끝에서 뒷문의 안쪽 면 사이: 25센티미터 이상의 공간 확보
- 구급차 환자실의 너비: 간이침대를 바닥에 고정시켰을 때 적어도 한쪽 면과의 통로가 25센티미터 이상
- 구급차 환자실의 바닥에서 천장 안쪽 면까지의 높이: 특수구급차는 150센티미터 이상, 일반구급차는 120센티미터 이상

구급차의 환자실 내부표면(구급차 기준 규칙 제5조)

- 설치된 장치: 차량 표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할 것
- 노출된 구조물의 가장자리: 16분의 5센티미터 이상의 반지름으로 깎아 내고, 노출된 모서리는 10분의 12센티미터에서 10분의 25센티미터의 반지름으로 둥글게 할 것
- 구급차의 환자실 표면
 - 비누나 물이 스며들지 아니할 것
 - 살균할 수 있을 것
 - 곰팡이에 저항성이 있을 것
 - 열에 강할 것
 - 청소하기가 쉬울 것

 구급차의 내부장치(구급차 기준 규칙 제6조 [별표 2])

○ 구급차 내부 장치는 정해진 기준에 맞춰 구비하여야 함

〈구급차 내부장치 기준〉

구분	장치명	형식·형태·재질 등의 기준	수량
공통 (일반, 특수 구급차)	가. 간이침대 (Main Stretcher)	1) 시트의 재질은 가죽·인조가죽 또는 비닐이어야 한다. 2) 침대의 금속부분은 강하고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이어야 한다. 3) 차량에서 분리가 가능하고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부속장치가 있어야 한다. 4) 시트에는 가슴·엉덩이·발목 등 3개 이상의 부위를 고정시킬 수 있는 환자고정장치(너비 5센티미터 이상인 띠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띠는 가죽·나일론 등 쉽게 끊어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쉽게 조이고 풀 수 있는 조임쇠가 있어야 한다.	1식 (평상시는 차량에 부착)
	나. 보조들것 (Sub-Stretcher)	들것의 지지대는 가볍고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접고 펼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1식 (평상시는 접어서 한쪽 면에 부착하여 보관)
	다. 갈고리	1) 비닐팩으로 된 정맥주사용 수액세트 등을 걸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2) 접으면 부착 면과 평행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접고 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1개 이상 (천장 또는 옆면에 부착)
	라. 의료장비함	여러 의료장비를 신속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 의료장비들이 차량 내부에 흐트러지지 않게 정돈해놓을 수 있는 별도의 함(종이, 플라스틱 또는 천 소재 등)을 구비하면 됨	1개 이상
	마. 응급의료인 좌석	간이침대 옆 또는 앞에 고정식 또는 접이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구급차에 간이침대 옆에 긴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긴 의자로 대체할 수 있다)	1개

구분	장치명	형식·형태·재질 등의 기준	수량
	바. 조명장치	1) 환자실의 이동조명장치를 제외한 모든 조명을 켜줄 경우 구급차 간이침대 표면에서 측정시 15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환자실의 조명등은 천정에 부착되어야 하고, 흰색 외에 색깔이 있는 조명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조명등에는 조명등이 깨질 경우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플라스틱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참고. 조명등은 굳이 형광등일 필요 없이 자유로운 소재 선택 가능. 다만 색깔은 흰색으로 할 것	2개 이상
	사. 이동용조명장치	1) 이동시키면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비추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조명장치는 조명장치보다 밝은 조도를 가져, 환자 국소 처치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개
	아. 환풍기	환자실 내부 뒷면의 천정에 설치하여야 한다.	1개 이상
	자. 전기공급장치 (콘센트)	환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참고. 환자가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하던 기본적인 의료장비(환자의 활력징후 모니터, 심전도 모니터링 장비 등) 등을 호환하여 연결할 수 있는 220V 전원콘센트를 원칙으로 함 - 이 경우 일반구급차는 기존 전원선 등을 활용하거나 차량용 배터리에 별도로 직접 연결, 일정용량의 전원을 교류로 변경하여 220V 전원콘센트 형태로 출력하는 인버터를 설치할 수도 있다. (시거잭 자체만은 인정 안 됨)	2개 이상
	차. 기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의료장비 등을 갖추 수 있는 공간 및 설치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착물을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적절한 수의 부속장치 설치

구분	장치명	형식·형태·재질 등의 기준	수량
특수 구급차	가. 간이침대 (Main Stretcher)	공통사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1) 접고 펼 수 있는 것으로 네 바퀴가 달려 밀거나 당겨서 손쉽게 옮길 수 있어야 한다. 2) 침대의 윗부분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구조여야 한다. ※ 참고. 일반구급차-가.간이침대의 항목들에 더해서 추가로 1), 2)를 만족하는 간이 침대	
	나. 긴 의자	1) 환자를 실은 상태로 보조 들것을 놓을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 2) 보조 들것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간이침대와 긴 의자 사이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1개
	다.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	1) 재질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등으로 가볍고 잘 부서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사용한 물을 저장하였다가 버릴 수 있는 설비를 연결하여야 한다.	1개 (환자실 내부의 1개 모퉁이에 설치)
	라. 교류발생장치	1) 의료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교류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환자실에 있는 전기공급장치에 연결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 자동차의 일반 주행 및 에어컨 등에 사용하는 주전력 배터리 외에 일정시간 동안 의료장비 등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 확보 - 이 경우 특수구급차는 별도의 발전기 등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주전력 배터리 외에 추가 배터리 등을 설치 ※ 설치방법에 따라 자동차구조변경 승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 (자동차 구조, 설계방식에 따라 다름) 필요시 각 지역 자동차검사소에 문의 * <u>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제77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u>(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u>	

구급차의 운행연한(구급차 기준 규칙 제7조의2)

- **(운행연한)** 구급차는 일정 운행연한(차령) 하에서만 운영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운행 불가
 - 구급차의 운행연한(차령)을 9년으로 제한
 - 해당 구급차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고,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이 경우 매6개월마다 연장된 차령 기간에 있는 구급차 역시 구급차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고, 연장을 받은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장 가능 ➡ **최대 11년까지 운행 가능**
- ※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의 수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응급의료법 제46조의2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 구급차 기준 규칙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본문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음
- **(차령기산일)** 차령기산일은 구급차 운용 신고·허가·통보일과 무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등록일” 기준으로 산정**

♣ 차령 기산일 산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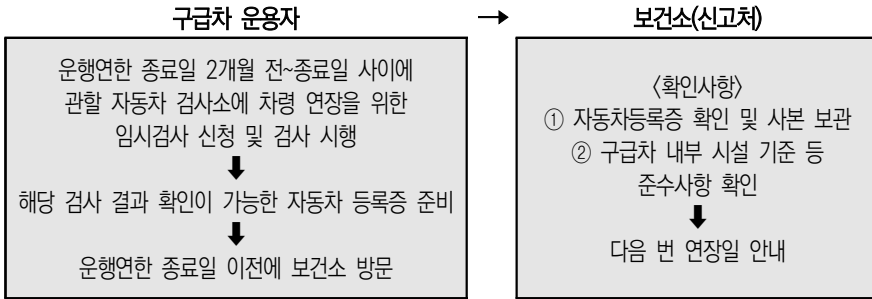
※ 차령 산정의 목적은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여 구급차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차량의 실제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작연도 자동차 등록 여부에 따라 기산일의 일부 차이가 있음

- 제작연도에 등록된 차량: 최초의 신규등록일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 제작연도의 말일

〈예시〉

구 분	제작연도	자동차 등록일	차령 기산일
제작연도에 등록된 차량	2019년	2019년 6월 1일	2019년 6월 1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	2018년	2019년 6월 1일	2018년 12월 31일

○ (차령연장절차)



〈 예 시 〉

- 2015년에 제작된 구급차로서 2015년 10월 10일에 자동차 소유 등록을 하고, 구급차 운용 신고를 2015년 10월 17일에 실시한 경우
- 차령 만료일:
자동차 등록일(2015년 10월 10일) + 9년 = “2024년 10월 9일”
 - 차령 연장 신청일:
차령 만료일 2개월 전부터 가능 = “2024년 8월 10일~2024년 10월 9일”
 - 임시 검사 합격 시 차령 만료일 6개월 연장:
차령 만료일(2024년 10월 9일) + 6개월 = “2025년 4월 9일”
 - 2차 차령 연장 신청일:
연장된 차령 만료일 2개월 전부터 가능 = “2025년 2월 10일 ~2025년 4월 9일”
 - 임시 검사 합격 시 차령 만료일 6개월 다시 연장:
차령 만료일(2024년 4월 9일) + 6개월 = “2025년 10월 9일”

Q & A

1

구급차의 차령 만료일 이전에 임시검사를 받았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재검사 통지를 받은 경우 연장사용할 수 있나요?

☞ 차령만료일 이전에 임시검사를 받고 재검사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차령만료일이 지났더라도 통지된 재검사 기간내에는 임시검사(재검사)가능하며, 검사결과 적합판정시 차령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차령만료일 이후 차령연장 처리 이전까지 기간동안에는 구급차로서 운영을 해서는 안됩니다.

VI 구급차의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 의료장비는 아래의 기준에 맞춰 항시 완비되어 있어야 하며, 환자에게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 필요
- 구급차 의료장비는 허가된 품목을 사용하고,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보관방법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구급차의 의료장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별표 16])

구분	장비분류	구급차 구분	
		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가. 환자 평가용 의료장비	신체 검진	• 체온계 (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 등의 재질로 되지 않은 것) • 청진기 • 휴대용 혈압계 •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 환자감시장치 (환자의 심전도, 혈중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호흡 등의 측정이 가능하고 모니터로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장치) • 혈당측정기	• 체온계 (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 등의 재질로 되지 않은 것) • 청진기 • 휴대용 혈압계 •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나. 응급 처치용 의료장비	1) 기도 확보 유지	• 기도확보장치 (구인두기도기, 비인두기도기 등) •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치 (기도삽관튜브 등 포함)	• 기도확보장치 (구인두기도기, 비인두기도기 등)
	2) 호흡 유지	• 성인용·소아용 산소 마스크 (안면용·비재호흡·백밸브) • 의료용 산소발생기 및 산소공급장치 •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 (흡인튜브 등 포함)	• 성인용·소아용 산소 마스크 (안면용·비재호흡·백밸브) • 의료용 산소발생기 및 산소공급장치 •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 (흡인튜브 등 포함)

구분	장비분류	구급차 구분	
		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 의료용 분무기 (기관제 확장제 투여용) •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자동식)	
	3) 심장 박동 회복	•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
	4) 순환 유지	• 정맥주사세트	• 정맥주사세트
	5) 외상 처치	•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 (압박붕대, 일반거즈, 반창고, 지혈대, 라텍스장갑, 비닐장갑, 가위 등) • 부목(철부목, 공기 또는 진공부목 등) 및 기타 고정장치 (경추·척추보호대 등)	•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 (압박붕대, 일반거즈, 반창고, 지혈대, 라텍스장갑, 비닐장갑, 가위 등)

가. 환자평가용 의료장비

- **(체온계)**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고막 또는 비접촉식 체온계 구비
※ 바닥에 떨어져 깨질 우려가 있으므로 유리 등의 재질로 된 것으로는 하지 말 것
- **(청진기)** 환자 청진 또는 수동혈압계, 비위관 삽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청진기
- **(휴대용 혈압계)** 구급차량 내에 부착되지 않고 휴대하여 환자의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식 또는 수동식 혈압계

		
〈체온계〉	〈청진기〉	〈휴대용 혈압계〉

-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Pulse Oxymetry)** 손가락 등에 집게 형태로 물려서 환자의 산소 농도 및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식 기구.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또는 기관삽관, 기도유지기를 사용한 환자에게는 반드시 사용하여 산소포화도가 적정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사용
- **(환자감시장치)** 통상 ‘EKG모니터링’으로 불리우는 장비로, 환자의 심전도, 혈중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호흡 등의 측정이 가능하고 전자식 모니터로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장치를 말함. 구급차에서 분리하여 환자를 현장에서 구급차로 이송시 휴대할 수 있는 형태로 갖추는 것을 권장하나, 차량에 고정된 형태도 가능
- **(혈당측정기)** 환자로부터 소량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당을 전자식으로 측정하는 장비로 측정에 필요한 측정용지 및 이를 버릴 폐기물통 등을 포함

		
〈휴대용 산소포화도 측정기〉	〈환자감시장치〉	〈혈당측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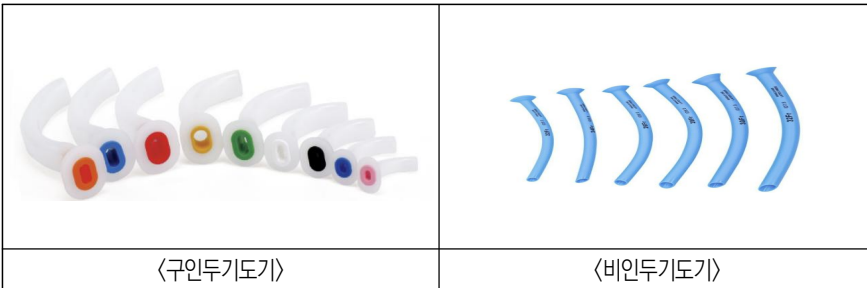
나. 응급처치용 의료장비

1) 기도확보유지

- (기도확보장치) 구인두기도기 사이즈별*로 1개 이상 및 비인두기도기 사이즈별로 1개 이상(최소 총4개 이상)

* 사이즈별이라 함은 성인용·소아용 각각 최소 1개 이상씩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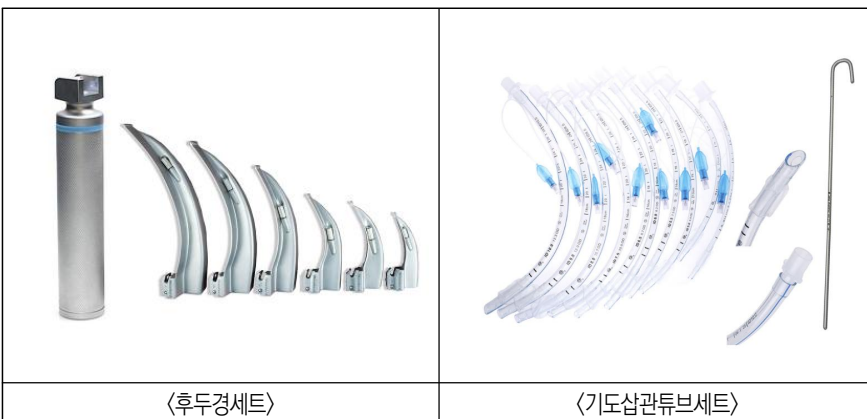
※ 구강(또는 비강) 기도유지기는 사용 후 멸균소독이 가능한 소재로 하며, 사용전 항상 포장된 상태 유지



-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치(기도삽관튜브 등 포함))

- 후두경은 핸들(손잡이)과 블레이드를 사이즈별*로 결합하여 결합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결합 시 블레이드에 불이 들어와야 함
- 기도삽관튜브세트는 사이즈별* 기도삽관튜브, 탐침(스타일렛), 기도 내 고정을 위해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주사기(balloon syringe), 삽관 후 고정을 위한 바이트 블록 등을 포함하며, 인공호흡기와 탈착이 용이하여야 한다.

* 사이즈별이라 함은 성인용·소아용 각각 최소 1개 이상씩을 의미



2) 호흡유지

- (성인용·소아용 산소 마스크 (안면용, 비재호흡, 백밸브)) 단순 안면 마스크 (simple face mask), 비재호흡 마스크(non-rebreathing mask), 백밸브 마스크(일명 ‘앰부마스크’)를 성인용, 소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1개 이상씩 (최소 총 6개 이상)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산소공급장치와 연결하여 환자에게 산소가 투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의료용 산소발생기 및 산소공급장치) 구급차 내부에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정량의 산소를 비치하고 이를 환자에게 마스크, 비강케놀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기구 일체를 의미
-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흡인튜브 등 포함)) 환자에게서 분비되는 분비물·혈액 등을 음압장치 등을 이용해 빨아들여 구강 또는 상처부위 등에서 제거할 수 있는 흡인기(Suction Device) 및 튜브*(suction tip, tube or catheter), 세척액 등 부속품 일체를 의미하며, 흡인기는 수동이 아닌 전기로 작동되는 형태로 갖추어야 함

* 튜브는 1회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 (의료용 분무기(기관제 확장제 투여용)) 기관지확장제 등을 분무형태로 만들어 환자가 흡입할 수 있도록 하는 네블라이저(nebulizer) 등
-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자동식))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마스크를 통해 산소 등을 압력을 걸어 공급을 해야 할 상황이나, 들것으로 이송하는 등 이송 인력의 손 부족으로 이를 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비, 일시적으로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장비로, 자동식으로 구비

	
〈의료용 분무기〉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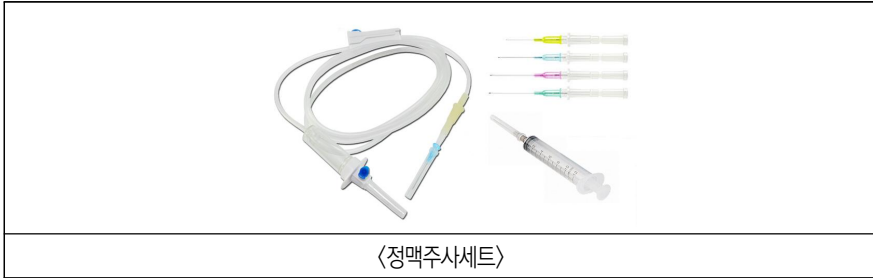
3) 심장박동회복

- (자동심장충격기(또는 자동제세동기))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는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 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

※ 환자의 심장박동을 자동으로 측정 및 환자에게 제세동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는 음성, 문자, 점멸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기기

4) 순환유지

- (정맥주사세트) 환자에게 수액을 주사할 수 있는 주사바늘, 주사기, 수액라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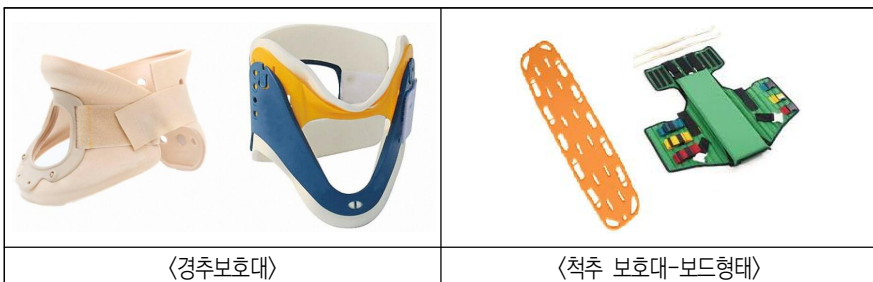


5) 외상처치

-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 압박붕대, 일반거즈, 반창고, 지혈대, 라텍스 장갑, 비닐장갑, 가위 등
- (부목) 철부목, 공기 또는 진공부목 등



- (기타 고정장치) 경추·척추보호대 등





구급차의 구급의약품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별표 16])

- 구급의약품은 필요시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구비
- 구급의약품은 공통적으로 유통기한 이내의 제품이어야 하며,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보관하여 약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하고 **[붙임3. 의약품 관리대장]**을 상시 작성
- 모든 의약품 투여시 그 용법 및 용량은 지도의사의 구체적 지시에 따를 것

장비 분류	구급차 구분	
	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의약품	• 비닐 팩에 포장된 수액제제(생리식염수, 5%포도당용액, 하트만용액 등) • 에피네프린(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 아미오다론(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 비닐 팩에 포장된 수액제제(생리식염수, 5%포도당용액, 하트만용액 등) • 에피네프린(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 아미오다론(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소독제	• 생리식염수(상처세척용) • 알콜(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수 • 포비돈액	• 생리식염수(상처세척용) • 알콜(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수 • 포비돈액

○ 의약품

- (비닐 팩에 포장된 수액제제) 환자가 출혈, 저혈압, 고혈당 등으로 수액제제 투여가 필요할 시 응급으로 혈액량 등을 보충하기 위해 정맥투여가 가능한 형태로, 유리병이 아닌 비닐팩에 포장된 생리식염수(NS), 포도당액 (5%DW), 하트만 용액 등의 제제
- (에피네프린) 심폐소생술 사용 용도로 한정되며, 임의로 희석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됨
- (아미오다론) 심폐소생술 사용 용도로 한정

-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비마약성진통약제
-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알러지 반응 등에 투여 가능한 항히스타민제
- (설하용 니트로글리세린, Sublingual Nitroglycerin) 협심증(angina pectoris) 등 허혈성심질환(ischemic heart disease)환자의 흉통 경감을 위해 투여*
* 2급 응급구조사는 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약물에 대한 투여만 가능
-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Bronchodilator) 천식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용 기관지 확장제 약제*
* 2급 응급구조사는 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약물에 대한 투여만 가능

○ 소독제

- (생리식염수) 정맥주사용 생리식염수와 별도로 상처세척용 생리식염수를 구비하여야 하며, 보통 비닐 팩이 아닌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형태를 의미
- (알콜 또는 과산화수소수) 소독용 알콜 또는 과산화수소수 구비
- (포비돈액) 소독용 포비돈액 구비

♣ 의약품 구매 관련 참고

-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독을 받아 응급의료법에서 정하는 의약품을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에게 구매할 수 있음

* 관련규정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하 “의약품공급자”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의약품의 소매

나.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을 부칙 제5조에 따른 약업사 또는 매약상(이하 “약국등의 개설자”라 한다),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의 의약품 판매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판매 사유) 법 제47조 제1항제2호에서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별표 1의2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의약품을 소매·판매할 수 있는 경우”

10. 응급의료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구급 의약품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독을 받아 구입하는 경우

구급차의 통신장비

- 특수구급차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구급차에 장착된 형태로 응급 의료전용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를 의미. 다만, 119구급대 구급차에 장착된 무전기는 소방용 전파지정기준에 의한 전파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구급차 무전기에 같음

* 현재 응급의료전용주파수는 미운영중으로 휴대전화로 대체 가능(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별표 16])

- 운전기사 및 환자실의 응급의료종사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구급차 기준 규칙 제7조)
-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응급의료기관과 항상 교신될 수 있는 상태 유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별표 17] 7.)

관련 처벌 조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의료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에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등과 통신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저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Ⅶ 기타 구급차의 의무설치 장비

응급의료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별표 16의2], [별표 17]

구급차 운행기록장치(Ambulance Digital Tachograph)

○ 정의

- 자동차의 속도·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착장치 중 하나인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형태(예시)〉	〈기능: 시간, 속도, RPM 등 기록〉

○ 법적 장비 기준

장비 기준	구급차 운행기록장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운행기록장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정보의 수집·보관·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	1) 구급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은 6개월간 보관하고, 보관 기관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2) 구급차 운행 기록은 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3) 구급차 운행 기록의 제출은 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4) 구급차 운행 기록 장치에 따른 정보 수집·보관 및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 등 관련 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운행기록장치의 장착)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말한다.

운행기록장치가 갖추어야 하는 장치 및 기능의 기준(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1. 장치 및 기능

장치	기능
가. 위치추적장치	1) 성능이 1Hz 이상일 것 2) GPS를 통한 위치추적이 가능할 것
나. 기억장치	1) 1초 단위의 데이터를 6개월 이상 기록·저장할 수 있을 것 2) 외부에서 입력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 것
다. 이동식 저장장치 유선인터페이스 또는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기억장치에 기록·저장된 운행정보를 추출하여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근거리 무선통신으로 전송할 수 있을 것
라. 운행상태 확인 장치(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1) 사용자가 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사용자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을 것
마. 운행기록 보안장치	1) 운행기록장치 내부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할 것 2) 운행기록장치의 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바. 그 밖의 장치(운행기록장치에서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장치를 제외한 장치를 말한다)	1) 차량속도의 검출이 가능할 것 2) 기기 및 통신상태의 오류 검출이 가능할 것

2. 제1호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의 세부장치와 기능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79호)

운행기록장치의 세부기준(제3조 관련 [별표 1])

1. 장치의 구조

가. 구조 일반

전자식(Digital) 운행기록장치(이하 “장치”라 한다)는 자동차로부터 속도 등 운행기록을 검출할 수 있는 수집장치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위성항법 장치, 시간 신호를 발생하는 타이머, 각종 신호를 처리하여 필요한 정보로 변환하는 연산장치, 정보를 가시화하는 표시장치, 운행기록을 저장하는 기억장치, 기억장치의 자료를 외부 기기에 전달하는 전송장치로 구성되며, 각 장치는 기능별로 통합 또는 분리되어 있을 수 있다. 장치는 분석 및 출력을 하는 기기를 포함할 수 있다.

나. 외형 및 케이스

- (1) 장치에 사용되는 재질은 강하고 인체에 무해하여야 한다.
- (2) 장치의 외부 모서리 및 코너부분은 부드럽게 처리되어야 하고 조립에 필요한 볼트머리, 너트, 날카로운 모서리 또는 홈 등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 즉, 외부의 표면은 사용자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 (3) 단말기 케이스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해 및 재조립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임의로 분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치에 보안처리 되어야 한다.

다. 위치추적장치

위치추적장치는 단말기에 장착되어야 하며, 그 성능은 1Hz이상이어야 한다.

라. 기억장치

6개월 이상의 1초 단위 데이터를 기록·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이동식기억장치 인터페이스 또는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장치에서 습득한 운행기록 정보를 운행기록분석시스템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범용적으로 유통되는 이동식 기억장치 또는 근거리 무선통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바. (삭제)

사. 영상기록 보조기능(선택사항)

영상기록장치에 운행기록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모듈 또는 영상카메라와 인터페이스할 수 있는 모듈을 갖추어야 한다.

아. MMI(Man Machine Interface)

사용자가 현 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와 사용자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한다.

자. 조작 방지

장치의 내부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 교정인자 설정기기 인터페이스

교정인자 값이 입력 및 변경은 장치에서 직접 설정할 수 없어야 하며, 외부의 별도 교정인자 설정기기를 통해서만 설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장치의 성능

가. 정밀도

- (1) 주행속도계부 지시 오차
주행속도계부 지시의 허용오차는 표준 주행속도계 지시값의 $\pm 2\%$ 이내이어야 한다.
- (2) 순간 속도 기록 오차
기억장치 각 부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표준 주행속도계 지시값의 $\pm 2\%$ 이내이어야 한다.
- (3) 운행거리 기록의 기록 오차
운행거리 100km에 대한 오차는 2km 이내이어야 한다.

(4) 운행 시간의 표시 또는 기록 장치의 기록 오차

1 일용(분)	2일 이상 n일용 (분)
± 2	$\pm [2 + 2(n - 1)]$

나. 기억 유지

장치는 외부전원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내부에 저장된 운행기록이 변형 및 소실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 그 밖에 장치를 시험하였을 때 온도, 내진성, 전원 역접속성, 내과전압성, 내과도 전압성, 전자파 장애 및 내성, 정전기 방전 보호와 관련하여 장치 각 부에 이상이 없고 정밀도를 충족하여야 한다.

3. 장치의 식별

가. 장치의 단말기 형식승인번호와 제품일련번호로 단말기 표면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며, 단말기 표시부를 통해서도 확인되어야 한다.

나. 형식승인번호는 형식승인연도, 기본형식승인번호, 변경형식승인번호로 구성하며, 제품일련번호는 모델명, 제작연도, 제작일련번호로 구성해야 한다.

(1) 형식승인번호 구성(10자리)

자리수	설 명	실제 값
1~2 (2자리)	형식승인연도	"00~99" 형식승인연도 2자리
3 (1자리)	구분자	"-" 승인연도와 기본형식 승인번호 구분자
4~7 (4자리)	기본형식 승인번호	"0001~9999"
8 (1자리)	구분자	"-" 기본형식 승인번호와 변경형식 승인번호 구분
9~10	변경형식 승인번호	"00~99"

예) 10-0001-00 → 2010년도에 승인되었으며, 첫 번째 승인된 제품으로 기본형이다.

(2) 단말기 제품일련번호 구성(14자리)

표기군	자리번호	표시내용	세부내용
차종구분	1(1자리)	적용차종 구분	1=공용, 2=승용, 3=승합, 4=화물, 5=특수
모델명	2~6 (5자리)	단말기 제조사 고유형식	알파벳 또는 숫자로 조합된 고유모델명 빈칸을 포함할 수 없음
제작연도	7~8 (2자리)	제작연도(yy)	"00~99" 제작연도 2자리
제작일련번호	9~14 (6자리)	제작일련번호	"000001~999999"

예) 1K25MD08000001: 공용이며, 모델명 K25MD, 2008년도 제작, 일련번호 000001

4. 장치의 기능

가. 위치추적 기능

장치는 1초 이하 단위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여 검출할 수 있어야 하며, 검출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차속검출 기능

차속은 1초 단위로 순간속도를 검출할 수 있어야 하며, 검출된 데이터를 1초 단위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기억장치 기능

기억장치는 1초 단위 데이터는 6개월 이상 기록·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기능이 있어야 한다.

라. 무선통신 기능

- (1) 무선통신 모듈과 인터페이스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무선통신 기능을 가진 장치는 해당 무선통신기술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 (2) 무선통신 기능은 전국 또는 일정한 장소에서 운행기록분석시스템과 통신을 통해 운행기록을 송신할 수 있는 기능으로 통신장애시 장애 및 오류내용을 사용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

마. 영상기록 보조기능(선택사항)

장치는 영상기록 보조기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 (1) 장치에서 영상기록장치로 운행기록을 전송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능
- (2) 장치 내의 영상카메라와 연결되어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

바. 기초정보 입력 및 보안관리

장치에 차량번호, 운송사업자코드, 교정일자 등과 관련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입력된 정보는 사용자 및 제3자가 임의로 위·변조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기초정보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표시장치에 이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 교정일자 입력 등

펄스 신호입력의 경우에 한하여 외부의 교정일자 설정기기를 통한 다음 각 호의 교정일자 입력기능이 있어야 한다.

- (1) 속도 계산의 기초인자인 차량이 1km 주행할 때 속도센서에서 검출되는 신호수(pulse/km)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입력된 정보는 사용자 및 제3자가 임의로 위·변조할 수 없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 (2) 분당회전수(RPM) 데이터는 엔진에서 RPM 계기판으로 올라오는 최종 신호를 확인하여 교정인자로 신호수(pulse/1회전)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입력된 정보는 사용자 및 제3자가 임의로 위·변조할 수 없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선택사항)
- (3) 교정입력데이터는 국가측정소급성을 가져야 한다.

아. 시간관리 및 교정

장치에 내장된 시계는 주기적으로 위성항법장치, 통신모뎀, 시간 서버 등으로 부터 수신된 시각에 의해 교정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자. 소프트웨어 관리

장치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수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실시간 통신을 활용하는 경우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차. 정보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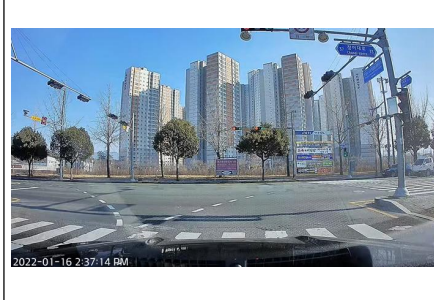
장치는 외부조작으로 다음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 (1) 소프트웨어 버전
- (2) 형식승인번호
- (3) 제작번호
- (4) 현재 속도, RPM(선택사양), 일일연속주행거리, 일일연속주행시간, 자동차 번호 등을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능
- (5) 장치의 전원공급 불량 등 장치의 고장 및 오류상태의 표시 또는 안내를 문자, 코드 등으로 시각 또는 청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
- (6) 운행기록 백업회수(최근 5회), 최근 백업일시 표시기능
- (7) 기억장치 접속시 백업 메뉴기능과 백업자료의 저장기능. 이 경우 백업 메뉴에는 백업회수(최근 5회), 최종 백업일시, 전체 백업자료 저장기능 등 사용자가 용이하게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 (8) 무선통신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운행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분석시스템으로 송출할 수 있는 기능으로써 일정시간 간격 또는 필요한 시간에 운행기록분석시스템으로 송출하기 위한 시간설정 및 전송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9)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전자코드의 입력이 용이하도록 해야 하며, 입력방식은 근거리 무선통신 또는 별도의 입력 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10) 장치는 운전자 인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선 또는 무선 장치와 연동되도록 인터페이스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11) 운행기록을 기억장치 등에 저장시 완료예정시간 또는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저장된 운행기록자료는 암호화된 파일로 되어야 한다.
- (12) 운행기록장치는 운행기록자료의 추출과 표시장치의 내용 확인이 쉽도록 시인성이 확보된 위치에 장착하여야 한다.
- (13) 운전시작시간, 운행시간, 휴식시간, 운행거리 등 주요 운행기록이 장치 내·외부의 기기를 통하여 종이 출력물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구급차 영상기록장치(Digital Video Recorder(DVR))

○ 정의

- 일반 카메라기능의 제품으로 차량에 일정 이상의 충격(사고발생)이 오면 사고 전후의 동영상을 기록하는 장치(일명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기록장치 형태〉	〈기능: 영상정보녹화〉

○ 법적 장비 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16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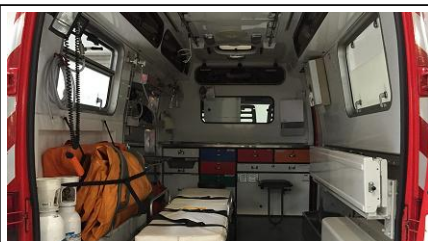
장비 기준	구급차 영상기록장치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로 한다.
정보의 수집·보관·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	1) 구급차 영상기록장치는 차량 전면 방향 등의 외부만 촬영하도록 장착하고 교통사고 증거수집이나 범죄의 입증 또는 예방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구급차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은 1개월간 보관하며, 보관 기관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3) 구급차 영상 기록은 영상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4) 구급차 영상 기록의 제출은 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5) 구급차 운행 기록 장치에 따른 정보 수집·보관 및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정의

- 구급차 내부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 구급차 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가 차량 전면을 촬영하여 주행 중 사고 등에 대한 영상기록을 확보하는 기기인 반면에,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일명 CCTV)는 별도로 차량 내부에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적합도록 설치한 장비를 말함

	
〈영상정보처리기기 형태〉	〈기능: 구급차 내부 영상정보녹화〉

CCTV 촬영 안내			
촬영목적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 목적		
촬영범위	구급차 내 환자실	관리책임자	
촬영시간	환자 탑승중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문〉 예시			

○ 법적 장비 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16의2])

장비 기준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는 구급차 내부의 조도를 고려하여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영상촬영 기능과 그 영상을 디지털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기타	1)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처리기를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와 각도로 환자실에 설치하여야 하고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2)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는 이송 중인 환자(이송을 돕기 위하여 환자와 탑승한 보호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영상 정보를 수집한다. 3)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 운행 시 영상정보처리기가 항상 작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임의로 차량 내 조명이나 영상정보처리기의 전원을 끄는 등 영상정보 수집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구급차 운용자는 환자 등 구급차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영상정보 수집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 등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1개월간 보관한다. 6) 구급차 운용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환자실내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관리자 성명(또는 직책)·업체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사실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8)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 영상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구급차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관리책임자 외의 자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이를 열람할 수 없다. 9) 구급차 운용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10)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구급차 영상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 정의

- 구급차의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장치

※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의 내부에 구급차 이용자에게 요금이 잘 보이도록 요금미터장치를 장착하여야 함



○ 장착대상(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별표 16의2])

- 의료기관(다만, 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구급차의 경우에는 장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응급환자이송업
- 응급환자 이송 목적의 비영리법인

※ 119구급대, 보건소 등 국가 및 지자체, 다른법령에 따라 구급차를 두는 마사회, 사업장 등의 운용 구급차는 이송처치료를 받지 않으면 장착하지 않아도 됨

○ 요금미터장치 검정(「자동차관리법」 제47조)

-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검정 종류

구분	시행시기	검정기관
제작검정	택시미터를 제작 또는 수입 때에 실시하는 검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수리검정	택시미터를 자동차에 부착, 요금장치 개조 및 수리한 때 실시하는 검정	시·도 지정 택시미터 수리업자
사용검정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및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실시하는 검정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간지정정비사업자

- 요금미터장치 장착대상 구급차에 요금미터장치를 신규 부착 시 ‘수리검정’을 받아야 하고, 이미 부착된 요금미터장치는 구급차 정기검사나 임시검사 시 ‘사용검정’을 받아야 함

※ 제작검정은 요금미터장치 제작·수입자에 대한 의무로 구급차 운용자는 해당 사항 없음

- 법적 장비 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16의2])

장비 기준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구급차 요금미터장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제95조의 택시요금미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택시요금미터”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로, “택시요금체계”는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 요금체계”로 보되, 검정에 관한 사항은 택시요금미터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

관련 처벌 조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가 응급의료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장비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를 수집·보관하지 아니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처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VIII

기타 구급차의 관리기준



구급차 및 의료장비의 소독과 청결(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별표 17])

- 모든 응급환자 이송시엔 이송시작 전 반드시 체온 및 혈압, 맥박을 측정하고, 감염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엔 마스크 착용 등 적절한 종사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신종감염병 등이 의심될 경우 이송시작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어떻게 환자·종사자 보호조치를 해야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지시에 따를 것

○ 구급차의 소독: 주 1회 이상 실시

- 낮은 수준 소독제(low-level disinfectant)*나 이를 함유한 환경소독용 티슈 등을 이용해 환자와 접촉가능성이 있는 구급차 내부 표면(침상,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를 비롯한 전체 내부) 및 의료장비(환자접촉면 및 사용자 손잡이를 중심으로)들을 깨끗하게 소독 후 잘 말릴 것

* 10분 이내에 대부분의 영양성 세균과 일부 진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으나 결핵균과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하는 소독제로 1:500으로 희석한 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속칭 락스류), 4급 암모늄염 제제(염화벤잘코늄 등), 70~90% 알코올 제제 (Ethanol/Isopropanol), 아이오도퍼 소독제 등을 말한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1호 준용)

- ※ 일부 구급차 내부 표면의 시트 표면, 의료장비 표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위와 같은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 부식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내장재, 장비특성과 소독제의 특성을 확인한 후 적절한 소독제를 골라 시행할 것

- ※ 소독제는 식약처에 허가 또는 등록된 제품을 사용할 것

- 환자의 혈액 등으로 오염된 표면 및 바닥은 1회용 장갑 등을 착용하고 중간 수준 소독제*(intermediate-level disinfectant)를 이용해 제품별 기준에 따라 희석하여 세척 실시

* 세균, 바이러스, 진균과 결핵균은 죽이지만 세균 아포만 죽이지 못하는 수준의 소독제로 1:500으로 희석한 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속칭 락스류), 70~90% 알코올 제제 (Ethanol/Isopropanol), 아이오도퍼 소독제 등을 말한다.

- 환자의 침상에 린넨 등을 사용할 시, 깨끗하게 세탁 또는 소독된 린넨을 사용하고, 한 명 환자 사용 후에는 반드시 새 것 또는 세탁된 것으로 교체
- 구급차의 의료장비의 청결 관리: 사용 후 1회용 기구 등은 폐기 또는 소각, 그 외 재사용장비의 소독은 장비제조사의 소독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의료장비의 환자접촉면 및 사용자 손잡이 등은 낮은 수준 소독제나 이러한 성분을 함유한 환경소독용 티슈 등을 이용해 사용 후 즉시 소독
- 단, 환자에게 사용한 후두경날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1호)’을 준용해 준위험기구에 해당하므로 높은 수준의 소독을 실시하고 멸균증류수로 깨끗이 행군 뒤 건조 후 보관

구조장비의 확보(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별표 17])

- 긴급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구조 출동장비 구비
 - 비상등: 비상시 사용가능한 휴대용 조명기구 등
 - 신호탄: 섬광신호탄 등 반드시 화약류로 구매하지 않아도 됨
 - 소화기
 - 보온포

구급차의 차량 관리(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별표 17])

- 구급차의 연료 및 정기점검
 - 연료 최대주입량의 4분의 1이상을 유지하는 등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
 - 자동차 정기점검일 준수(연 1회)
- 구급차 별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 구급차 운행기록 대장을 비치·작성하고, 3년간 구급차 운용자가 보관
[붙임4 양식]



관련 처벌 조항

- 구급차 신고필증 발급을 위해서는 응급의료법 제46조 및 제47조(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16], [별표 16의 2], [별표 17])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하고, 동 사항 미충족 시에는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음
 - 미신고 운용 시 자동차 말소등록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응급의료법 제4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62조제1항제4의2호)

IX 구급차 운전자, 응급구조사 등의 준수사항

이송처치료 과다징수 금지

-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경우 응급의료법에서 정하는 이송처치료보다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됨 (응급의료법 제24조,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3호)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마목)
- 비용을 직접 징수한 응급의료종사자 및 해당 구급차의 운전자 처벌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의료 종사자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1개월
	의사, 간호사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1개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응급구조사의 기본 준수사항

-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해 업무 수행 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과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필요한 사항 준수

(응급의료법 제39조, 제55조제1항1호, 제62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13])

1. 구급차내의 장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하며, 장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비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2. 환자의 응급처치에 사용한 의료용 소모품이나 비품은 소속기관으로 귀환하는 즉시 보충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등이 보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구급차의 무선장비는 매일 점검하여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출동할 때부터 귀환할 때까지 무선을 개방하여야 한다.
4. 응급환자를 구급차에 탑승시킨 이후에는 가급적 경보기를 울리지 아니하고 이동하여야 한다.

5. 응급구조사는 구급차 탑승 시 응급구조사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소속, 성명, 해당자격 등을 기재한 아래 표식을 상의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응급구조사				
사진	성명		자격	
			자격번호	제 호
	(소속기관명)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하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7일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 과태료(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9조 [별표2] 2호 카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구조사	50만원	75만원	100만원

비밀 준수 의무

-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됨
(응급의료법 제40조, 제55조제1항1호, 제60조제3항제2호, 제61조)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거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 벌칙

- 당사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양벌규정 적용)응급구조사 소속의 법인에게도 위의 벌금형이 과해짐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제한

-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다만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수행하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 (응급의료법 제41조, 제42조, 제55조제1항제5호, 제60조제3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더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 벌칙

- 해당 응급구조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양벌규정 적용)응급구조사 소속의 법인에게도 위의 벌금형이 과해짐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이수

- 의료기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함
(응급의료법 제43조, 제55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더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구조사	시정명령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기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중앙응급의료센터

의료기관의 구급차 운용 위탁 시 준수사항

-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 구급차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5])

1.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위탁 구급차등의 등록번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번호, 구급차등 운용 신고번호, 운용 인력의 명단 및 자격 등을 위탁계약서에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은 그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한다.
 - 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의 준수 여부
 - 나. 수탁기관 소속 응급구조사가 [별표 13]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을 지켰는지 여부
 - 다. 법 제43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여부
3.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위탁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이를 위탁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위탁 구급차등의 월별 운행기록을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러목)
-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위탁자, 수탁자 모두 처분 가능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	시정명령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위탁 받은 자(이송업, 대한구조봉사회)			

※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받은 이송업자가 차량의 정비 또는 출동 인원의 부족 등 기타의 사유로 이송 출동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

Q & A

1

의료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응급환자이송업자의 특수구급차가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대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 계약을 맺은 응급환자이송업 구급차는 위탁의료기관의 구급차 운용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응급의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병원에 위탁된 구급차는 기본적으로 병원의 환자이송을 주 용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환자이송에 차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에서 구급차를 운용할 경우 응급환자이송업체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나요?

☞ 응급의료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일정 조건의 사업장은 구급차 운용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서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 구급차를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3

응급환자이송업체 구급차로 타 의료기관 간 중복 위탁 가능한가요?

☞ 응급의료법 제4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는 구급차 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자 간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구급차 위탁 계약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급차 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구급차 등의 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위탁 의료기관의 구급차 등 운용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이송업체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할 수는 있으나, 특정구급차 1대를 다수의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은 불가능합니다.

구급차의 운용신고(통보)

- 구급차의 운용자는 응급의료법에서 정하는 구급차 장비기준 등을 구비하여 자동차 등록 후 10일 이내에 사용본거지 시·군·구청에 구급차 운용을 신고
 - ※ 신고 이후에 법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함
(응급의료법 제44조의2, 제45조제2항, 제62조제1항제4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위반 시 처분사항〉

- 미신고(변경신고 포함) 운용 시 구급차의 자동차 등록 말소 처분 가능
- 구급차 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2] 2호 마목)

구급차의 사용 용도 제한

-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응급의료법 제45조,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위반 시 처분사항〉

- 구급차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구급차의 자동차 등록 말소 처분
-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서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구급차 내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통신장비 기준 준수

- 구급차에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통신장비를 갖추고 상시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함
(응급의료법 제47조,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별표 16], 제38조제5항 [별표 17])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저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준수

- 구급차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또는 의사, 간호사) 1인 이상과 운전자* 1인이 탑승하도록 하여야 함

* 운전사가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응급구조사 탑승으로 인정되지 않음
(응급의료법 제48조, 제55조제3항제1호, 제62조제1항제3의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커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 과태료(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2] 2호 차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Q & A

1

구급차로 응급환자 이송 중 응급구조사 등이 환자의 상태를 살필 수 있는 없는 격벽으로 분리된 앞좌석에 탑승하고 이송하였다면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으로 인정 가능하나요?

☞ 응급의료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 구급차 운전자 등은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을 위해 출동하는 경우 응급구조사 1인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해당 환자가 이송 중 응급환자 또는 응급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급차에 탑승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환자와 같은 공간에 탑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격벽, 차폐막 등으로 별도 공간에 탑승하였다면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즉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탑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비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종사자 탑승해야 하나요?

☞ 응급의료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구급차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그 구급차에 응급구조사(또는 의사나 간호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을 항상 탑승시켜야 합니다.

다만, 구급차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 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시에는 응급환자가 아닐지라도 구급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 여부는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인이 판단할 수 있으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응급상황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고 해당 환자가 이송 중 응급환자 또는 응급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환자 이송 등을 위한 구급차 운용 시 응급구조사 등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공통)

이송병원의 수용능력 확인 등

-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운전자와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이송을 시작한 즉시 통보
 - 통보내용: 환자의 발생 경위(확인된 경우만), 환자의 연령·성별·상태(활력 징후 및 의식수준), 현장 및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도착 예정 시각
 - 통보방법: 전화, 무선통신, 그 밖의 전산망 등을 이용
(응급의료법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Q & A

1

구급차 운용 시 장시간 대기 발생 시 환자의 인수인계 없이 구급차만 복귀해도 되나요?

☞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서 구급차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 진료 등을 위해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8조의2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운전자,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환자 등의 이송 시 대기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수용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기시간을 이유로 환자에 대한 인수인계 없이 환자를 두고 복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작성, 제출, 보존 등

-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작성(응급구조사 등)
 - 응급구조사(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작성)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한 때 3부 작성(응급환자를 인수한 의사의 서명 반드시 포함)
(응급의료법 제49조제1항, 제55조제1항제1호, 제62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제2항)

♣ 출동 및 처치 기록 3부의 용도

- (용도1)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제출
(용도2)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
(용도3) 이송처치료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이송처치료영수증과는 별개임)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터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7일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탑승한 경우)	면허정지 7일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 과태료(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2] 2호 카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구조사(또는 의사나 간호사)	50만원	75만원	100만원

-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제출(구급차등의 운전자)
 - 응급구조사 등으로부터 출동 및 처치 기록을 제출받은(용도1 관련)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그 기록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 (제출방법은 붙임5 참고)
(응급의료법 제49조제3항, 제55조제3항제1호, 제62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파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의 운전자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 과태료(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2] 2호 카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의 운전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Q & A

1

출동 및 처치기록 작성 시 환자를 인수한 의사 서명이 꼭 있어야 하나요?

☞ 응급의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응급구조사(또는 의사나 간호사)가 출동한 때에는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 등의 운전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출동 및 처치기록지 서식은 환자인수여사의 면허번호, 성명, 서명을 필수 기재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이송에 대한 기본적인 기록으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시 환자인수여사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의 자택 등으로 이송 시, '도착기관 명칭'에는 환자의 자택이라고 기재 후 '환자인수여사'는 공란으로 처리

○ 출동 및 처치 기록의 보관(구급차등의 운전자, 의료기관의 장)

- 구급차등의 운전자(용도1 관련)와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용도2 관련) 제출받은 출동 및 처치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함
(응급의료법 제49조제4항, 제55조제3항제1호, 제62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고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의 운전자, 진료의사 소속 의료기관의 장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 과태료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2] 2호 카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의 운전자, 진료의사 소속 의료기관의 장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지도의사 선임 또는 위촉

- 구급차의 운용자는(의료기관 제외)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를 사용하는 경우 상담·구조·이송 및 응급처치를 지도받기 위하여 지도의사를 두거나* 선임 또는 위촉
 - 지도의사 수 및 선임 등: 구급차 운전자 관할 시·도에 소재하는 지원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 1인 이상

* 구급차등 운용자가 지도의사를 고용한 경우

(응급의료법 제52조,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지도의사의 업무

- ▶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행하여진 응급의료에 대한 평가
- ▶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 ▶ 이송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보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송업자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X 구급차 운용 신고(통보)

관련 규정

- 응급의료법 제44조의2, 제4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 용어
 -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는 “통보”, 의료기관, 대한구조봉사회, 다른 법률에 의해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신고”한다고 표현
 - 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구급차에 대해 “허가증”을 발급하되, 허가 및 신고 후 운용 가능

신고절차

(별도의 통보절차가 있는 119 구급차 등을 제외하고 통보의 경우도 아래 신고절차를 준용)

가. <최초 신고(통보)>

- 1) 신고(통보) 대상: 국가 및 지자체,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의해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 응급환자이송업, 대한구조봉사회
- 2) 신고 주체: 구급차 운용자

의료기관의 구급차 신고 주체 관련

- 의료기관이 소유하지 않은 구급차로써 응급환자이송업, 대한구조봉사회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구급차는 **의료기관의 신고대상이 아니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및 신고확인증 발급, 대한구조봉사회 자체 신고), 의료기관 직접 소유의 구급차만 신고
- 의료기관이 리스차량으로 구급차를 운용하는 경우, 운용하는 의료기관이 신고.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원부와 함께 해당 자동차 리스업체와의 계약기간, 계약차량, 계약내용이 명시된 리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법인 또는 의원)이 운용하는 리스차량의 권리관계를 관할 관서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 신고 기한

- 자동차 등록 후 10일 이내(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 허가 후 10일 이내)
※ 개조차의 경우 개조 완료 후 10일 이내

4) 신고처

- 자동차 등록증상의 “사용본거지”의 보건소
※ 단, 대한구조봉사회의 경우 본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와 타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해 신고를 대행토록 할 수 있으나, 이는 지자체간 협의 결과에 따름

의료기관의 구급차 신고처 관련 예외

〈사례 1〉

- 개인(의사 등)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자 명의로 구급차를 등록하게 되어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에 따라 개인의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로 설정되어 구급차를 실제로 운용하는 지역(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과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발생

〈예시〉

의사A가 개설한 B병원은 전라북도 전주시이나 의사A의 주민등록지는 경기도 수원시인 경우 B병원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는 자동차 등록 시 소유자인 의사A의 주민등록지인 경기도 수원시를 사용본거지로 지정하게 됨

- (적용 방법) 개인(의사 등)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경우에 한해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아닌 의료기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도록 함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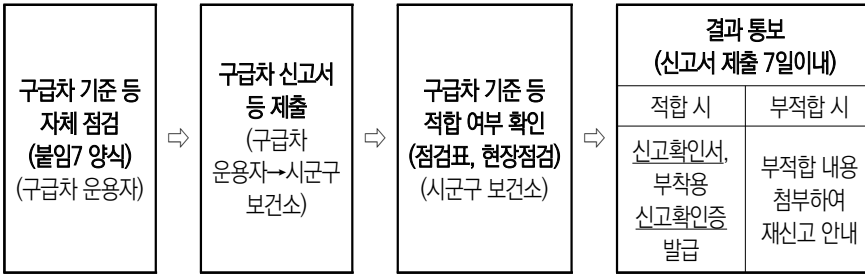
- 개인(의사 등)이나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개설자(법인) 명의로 리스한 자동차를 등록하게 될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에 따라 리스사업자 등록지가 사용본거지로 설정되어 구급차를 실제로 운용하는 지역(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과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발생
- (적용방법) 리스한 차량의 경우에 한해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아닌 의료기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도록 함

* 위 두 사례의 경우 모두 의료기관 개설신고증(개설허가증)을 통해 확인

5) 구비서류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별지 제15호의5서식]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붙임6 양식])
- 신고일 1주일 이내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원부

6) 처리절차



7) 세부처리 절차(보건소 담당자)

- ① 구급차 신고 문의가 들어온 경우 동 지침 및 점검표를 배부, 사전 준비 진행
- ② 신고서 등이 제출되면 보건소 담당자가 점검 구급차를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의료장비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응급의료지원센터 인력 등을 동반하여 점검
- ③ 의료장비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동 지침을 참고하되, 기능을 위주로 판단
- ④ 의료장비 돌려쓰기, 점검 용 임시 대여 등을 금지하기 위해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조치 필요 (각 보건소별로 별도의 조치 가능)

예시1) 보건소 소유의 RFID리더기를 이용하여 전자태그 부착

예시2) “관리스티커” 제작 및 부착

관리번호	세종-2014-1	세종-2014-1	관리번호
품명	자동제세동기	자동제세동기	품명
일련번호	DLKIJOI321	DLKIJOI321	일련번호
구매일	2013-1-1	2013-1-1	구매일
제조사	(주)ABCD	(주)ABCD	제조사

의료장비에 부착

보건소 보관

8) 기타

- 최초 신고확인서 발급 시 “변경신고”에 대해 반드시 안내

나. <변경 신고>

1) 신고 대상: 신고된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구급차 사용본거지 변경
- 구급차의 소유자 변경
- 구급차 구분(일반 ↔ 특수)의 변경
- 구급차 운용자의 단순 상호 변경

2) 신고 주체: 구급차 운용자

3) 신고 기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4) 신고처

- 자동차 등록증상의 “사용본거지”의 보건소
 - 구급차 사용본거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하고, 그 외는 기존에 신고한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

보건소 세부처리 절차

사용본거지 변동이 없는 경우	사용본거지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처리	구급차를 (A)보건소에 신고하고 운용하다가 운용기관 이전 등으로 사용본거지가 변동된 경우 구급차 운용자는 변동된 사용본거지의 보건소(B)에 변경신고
	↓
	변경신고 받은 보건소(B)에서는 기존 신고내역,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여 처리
	↓
	변경신고를 완료한 보건소(B)는 변경신고 처리 사항에 대해 기존 신고보건소(A)에 통보
	↓
	변경신고 사항을 통보받은 (A)보건소는 기존 신고내역을 서울행정시스템 상에서 신고(통보) 목록 삭제 등 실시

Q & A

1

응급환자이송업 구급차 중고거래 시 변경신고 주체는 누구에게 있나요?

☞ 의료기관 구급차의 중고거래가 완료되어 구급차 등의 소유자 변경 시 '새로운 구급차 운전자'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존 구급차 운용자는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기존에 신고한 시·군·구 보건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거래기간 동안 구급차 운용자가 아닌자가 구급차를 운용하거나, 구급차 운용자가 정해진 후에 신고하지 않고 구급차를 운용하는 것은 불법

5) 구비서류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5항 [별지 제15호의9서식]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붙임8 양식))
- 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서 1부

다. <재발급>

1) 재발급 대상: 신고(통보)확인서 발급 후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잃어버린 경우

2) 재발급 기관: 기존의 신고(통보)확인서 발급 기관

3) 구비서류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9항 [별지 제15호의10서식]
재발급 신청서 (붙임9 양식)

※ 기타 필요서류

-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 받으려는 (부착용) 신고(통보) 필증
-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라. <말소신고>

1) 말소신고 대상: 신고된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경우
- 응급의료법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가 초과 된 경우

2) 신고 기관: 기존의 신고(통보)확인서 발급 기관

3) 신고 주체: 구급차 운용자

4) 신고 기한: 말소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5) 구비서류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 [별지 제15호의11서식]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확인증,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XI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관련 규정

- 응급의료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구급차 기준 규칙 제8조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가. 처리기관

-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구급차 기준 규칙이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신청인인 법인 또는 개인이 이송업을 하고자 하는 시·도의 시·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동일)에게 접수하고, 시·도지사가 처리

* 해당 기준은 허가 이후에도 상시 유지되어야 하며, 미충족 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별표 18) 2호 모목)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나.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별지 17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사무소 및 분사무소(사업장)의 명칭 및 위치	• 사무소(이하 '기본사무소'라 함) 및 분사무소는 모두 동일 시·도 내에 위치하여야 함 •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해당 분사무소는 이송업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무실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함
영업지역(시·군·구 단위)	• 시·도지사는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 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응급의료법 제51조제2항)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급차의 총대수·종별·연식, 상용차 및 예비차의 구별	구급차 차량별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종별 및 구급차 구분 (특수/일반), 연식(운행연한 산정을 위한 기준에 따른 연식)을 기재
지도의사의 선임현황	- 지도의사의 선임 또는 위촉 관련 사항을 기재 - 지도의사 직접 고용시 고용관계 서류 - 지도의사 위촉시 소속기관, 연락처 등을 기록하고, 자격증 사본을 제출 ※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해당 지도의사에게 위촉사실을 확인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영업 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 법인의 경우 다음 서류 각 1부
 - 기존 법인: ① 정관, ② 임원의 명부, ③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신규 설립 법인: ①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② 발기인 또는 설립 사원의 명부, ③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다. 허가신청 시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구급차 기준 규칙 제8조 [별표 3])

1. 시설 기준	
가. 사무실	1) 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한다. 2) 구급차의 출동명령, 출동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세부기준 (1)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허가받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함 (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 가능

	〈확인 서류〉 ○ 매매·임대 계약서 등 - 허가를 받은 대표자 또는 법인 등의 명의여야 함 - 임대 시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여 종료 시에 재확인 ○ 임대외의 경우, 점검시 임대차 현황과 맞는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료 송금 영수증을 확인 ○ 사무실 중복 등록 확인이 필요할 시,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무실에 대한 '등록사항열람'을 실시하여 확인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물 등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③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라)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만,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 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이송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 가능 (마) 사무실은 다른 이송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이송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 전화 등 출동요청 접수 등이 가능한 통신설비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함 (바) 사무실은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과는 별도로 있는 공간으로 사무실 공간을 휴게실 및 대기실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허가기준 미충족으로 간주 (사) 이송업 사무실은 이송업 영위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아) 사무실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담당 공무원이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2) 출동기록의 관리 업무와 관련된 설비 (가) 최근 3년간의 소속 구급차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 '운행기록대장'등의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사무실내에 확보하여 이를 보관할 것
나.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 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 소형 1대당 13㎡ 이상 - 중형 1대당 23㎡ 이상 - 대형 1대당 36㎡ 이상 2) 차고의 바닥을 포장(鋪裝)하여야 한다. 3)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세부기준 - 차고라 함은 구급차가 운행을 마치고 돌아와 다음 운행 이전까지 대기 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를 하는 공간을 말함 - 이송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받은 차고에 소속 구급차가 주차 또는 대기토록 하여야 함 〈확인 서류〉 ○ 매매 또는 임대 계약서 - 허가를 받은 대표자 또는 법인 등의 명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자기 소유 외의 차고시설을 1년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볼 것 - 임대의 경우, 점검시 임대차 현황과 맞는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료 송금영수증을 확인 ※ 담당공무원은 실제로 활용 가능한 구역인지 현장 확인 실시 (허가 이후 주택가, 도로가 등에 불법주차로 민원 다수 발생)
다. 휴게실 및 대기실	종업원이 대기하거나 휴식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세부기준 - 소속 응급구조사와 운전자 총원의 1/30이상이 동시에 모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의미 - 휴게실 및 대기실은 사무실이나 교육훈련시설과는 별도로 있는 공간으로 휴게실 공간을 사무실이나 교육훈련시설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허가기준 미충족으로 간주
라. 교육훈련시설	응급구조·응급처치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세부기준 - 소속 응급구조사와 운전자 총원의 1/30이상이 동시에 모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의미하며, 응급구조·응급처치 교육장비 등을 보유해야 함 - 교육훈련시설은 사무실이나 휴게실 및 대기실과는 별도로 있는 공간으로 교육훈련시설 공간을 사무실이나 휴게실 및 대기실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허가기준 미충족으로 간주
마. 통신시설	- 사무실 내에는 응급의료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구급차에는 응급의료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교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전산망 및 무선설비 등 통신시설은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보유구급차 기준	
응급의료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특수구급차 5대 이상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신규로 받기 위해 신청자가 구급차를 구매하여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소”에서 허가 진행과 관련된 사실관계 (예: 임시허가증 등)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 응급의료법 상 임시허가 근거가 없고 임시허가 시 허가 전 불법 운용 등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 상기 요청시 허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해주되, 자동차 등록 후에 허가가 완료되면 다시 한 번 허가 세부사항 (허가 받은 구급차 세부내역 등)을 통보해 주고, 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 사실을 통보하여 불법으로 구급차가 운용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담당공무원은 각종 구급차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각 차량별 장비기준 등을 직접 확인 (필요시 해당 지역 응급의료지원센터 직원 협조)
3. 자본기준	
2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법인: 자본금 납입 증빙자료 등, 개인: 통장잔액 등) ☞ 자본금의 범위는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보유 구급차 및 현금성 자산 등 순 자산을 의미
4. 인력기준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특수구급차에는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세부기준. 인력기준의 산정 예시 ① 허가받은 특수구급차가 5대인 경우: 운전자 8명, 응급구조사 8명 ☞ 허가받은 특수구급차 5대 x 0.8 x 운전자 2명(응급구조사 2명) = 8명 ② 허가받은 특수구급차가 8대인 경우: 운전자 12명, 응급구조사 12명 ☞ 허가받은 특수구급차 8대 x 0.8 x 운전자 2명(응급구조사 2명) = 12.8명 ③ 허가받은 특수구급차가 5대이고, 간호사(이송업체에 고용되어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를 2명 고용한 경우: 운전자 8명, 응급구조사 6명 ☞ 본래 응급구조사를 8명 고용하여야 하나, 간호사가 응급구조사 업무 수행 시에는 대체 가능 ☞ 세부기준. 고용 사실의 입증과 확인 • 고용계약서, 자격·면허 사본, 4대보험 가입 확인 등 이송업체와 개인 간의 고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이송업체가 직접 소명 • 점검시 고용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월급 지출 내역, 기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역 등 확인) • 점검시 응급의료지원센터 등을 통해 업체별, 응급구조사 별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작성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근무 사실 확인

Q & A

1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기준 중 '자본기준 2억원'이라 함은 상시 보유 기준인지 최초 허가기준인가요?

☞ 이송업자가 일정 기준이상의 자본금 보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구급자동차 및 사무실등의 시설 외에 종업원에게 지급할 봉급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현금화할 수 있는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한 것입니다.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1995. 7. 31., 제정] 제정이유
응급의료법 제51조제7항은 이송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금 2억 원은 상시 유지되어야 하며, 반드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시 시간제(파트타임) 근무자의 인력 기준은?

☞ 「구급차 관리·운용 안내」에서 이송업체가 직원 채용 시 고용계약서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가입 확인 등을 하도록 명시한 취지는 응급구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 적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하여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직원 1명의 근무시간은 2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파트타임으로 8시간을 고용하였다면 나머지 16시간의 근무인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고용 사실의 입증과 확인

- 고용계약서, 자격·면허 사본, 사회보험 가입 확인 등 이송업체와 개인 간의 고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민간이송업체가 직접 소명
- 점검시 고용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월급 지출 내역, 기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내역 등 확인
- 점검시 응급의료지원센터 등을 통해 업체별, 응급구조사 별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작성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근무 사실 확인

3

응급환자이송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행정처분이 있나요?

☞ 이송업자가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하지 않았을 경우 응급의료법 제55조 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로목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응급의료법 제55조 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모목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허가 받은 지역 외에서 환자 또는 응급의료종사자를 이송하여 올 수 있나요?

☞ 응급환자이송업체의 미허가지역 영업 판단은 출발지를 기준으로 하며, 허가받은 시·도에서 '환자 또는 응급의료종사자'를 타 지역으로 이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타 시·도의 '환자 또는 응급의료종사자'를 이송하기 위해 허가받은 시·도를 벗어나 응급환자이송업을 할 경우 응급의료법 제60조 제2항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가. <허가증 발급>

1) 허가증의 발급목적

- 구급차 신고제 도입에 맞춰 허가제에 의해 운용되는 응급환자이송업 구급차에 대해서도 구급차 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착용 허가증을 발급하고, 부착용 허가증은 구급차 앞면에 반드시 부착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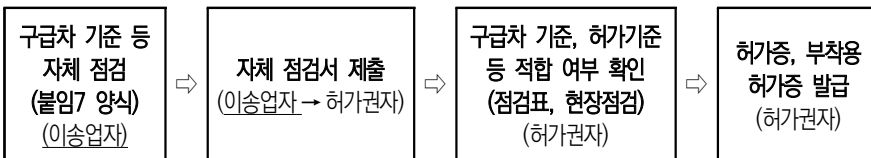
2) 발급대상

- 응급의료법 제51조에 의해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이송업자
- 기존에 허가 받은 모든 구급차 별로 부착용 허가증 발급

3) 발급처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관할하는 시·도

4) 처리절차



5) 기타

- 구급차 기준 규칙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인력기준* 준수 여부 철저히 확인

* 허가받은 특수구급차의 8할 이상의 특수구급차마다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으로써 구급차가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변경 허가>

- 1) 변경 허가신청 및 신고 대상: 허가된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허가 사항	신고 사항
1. 영업지역의 변경 2. 구급차의 증감*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사무소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포함)의 명칭 및 위치** 변경

* 구급차 증차시 이에 따른 관련 차고 면적 추가 확보 여부 및 인력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매매 또는 임대계약서를 제출받아 변경 여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2) 변경 허가 신청 및 신고 주체: 구급차 운전자
- 3) 변경 신고 기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 4) 변경 허가신청 및 신고처: 관할 시·도
- 5) 구비서류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별지 제20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서, 신고서))
 - 허가증 1부

다. <재발급>

- 1) 재발급 대상: 허가증 발급 후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잃어버린 경우

2) 재발급 기관: 관할 시·도

3) 구비서류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7항 [별지 제21호서식] 재발급 신청서

※ 기타 필요서류

-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 받으려는 (부착용) 허가증
-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XII 구급차 운용상황 및 실태 점검

정기적인 운용상황과 실태 점검(응급의료법 제50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시·도별 자체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1회 전국 점검을 실시, 이 경우 그 시기와 방법은 별도 공문에 의함

운용상황	종류	실태
• 신고(통보)필증 부착 여부 및 미신고(미통보) 차량 운용 여부 • 구급차 용도에 맞는 사용 여부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작성 여부 • (의료기관의 위탁을 받은 이송업체의 경우)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준수여부	신고(통보)된 구급차	• 구급차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기준 준수 여부 • 구급차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 기준 준수 여부 • 기타 변경신고(통보)사항 여부
• 허가필증의 부착 여부 및 미허가 차량 운용 여부 • 구급차 용도에 맞는 사용 여부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작성 여부 • 차고지 운영 및 주차 실태 확인 • (의료기관 위탁을 받은 이송업체)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준수여부	허가업체 구급차	• 구급차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기준 준수 여부 • 구급차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 기준 준수 여부 • 인력기준 준수 여부 • 기타 변경허가·변경신고사항 여부

점검 방법

- (1단계 점검대상 확정) 점검대상 확정 및 시스템 회원가입
- (2단계 자가실태점검) [붙임7양식]을 활용하여 자가실태점검 실시
- (3단계 현장점검) 자가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기관 현장점검 실시
- (4단계 처분시행)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처분절차 진행



관련 처벌 조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 점검 시 구급차의 관리기준 [별표 17] 미비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노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의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응급의료법 제45조제3항)
- 조회 결과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송업체에 소명을 요청하고 결과에 따라 용도 외 사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붙임 1 구급차 부착용 이용안내(안)

구급차 이용안내

이송처치로는 아래 기준표에 의해서 부과됩니다.



탑승하신 구급차는 ○○○도에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이송단(허가번호 : ○○○ 호) 소속

특수구급차, (차량번호) 입니다.

구 분		일반구급차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30,000원	75,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km당 1,000원	1km당 1,300원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5,000원	없음
할증요금	심야할증 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이송처치로는 구급차 내에 장착된 미터기에 의해 계산되며,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① 이송처치로는 "환자가 실제로 탑승하여 이동한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② 아래의 경우 등과 같이 이송처치로 외의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 왕복, 시외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 불법
- *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의약품 사용 비용 등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 불법
- * 카드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대기비 등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 불법

③ 환자 이송 시 반드시 "미터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④ 환자 이송 종료 시 이송처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하니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역 : 운행거리, 기본요금, 추가요금, 부가요금, 할증요금

⑤ 구급차에 응급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응급환자 이송 시에는 필수 탑승),
탑승한 응급의료종사자가 작성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탑승하신 구급차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은

○○○도 ○○○(전화○○○-○○○-○○○○)로 연락 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붙임 2 이송처치료 영수증 양식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5.1〉

이송처치료 영수증

영수증번호					
구급차 운용 통보(신고)번호 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번호				운용기관 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차량등록번호				운전자 성명	
차량 주행 거리		Km			
이송처치료 세부내역					
구 분		①기본요금 (10km 이내)	②추가요금 (10km 초과 시)	③부가요금 (일반구급차에 응급 구조사 등 탑승 시)	④할증요금 (00:00~04:00에 이용 시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법 제44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일반 구급차	□ 30,000원	___km x 1,000원	□ 15,000원	□ 6,000원 + ___km x 1,200원
	특수 구급차	□ 75,000원	___km x 1,300원	-	□ 15,000원 + ___km x 1,560원
법 제4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 20,000원	___km x 800원	□ 10,000원	□ 4,000원 + ___km x 960원
	특수 구급차	□ 50,000원	___km x 1,000원	-	□ 10,000원 + ___km x 1,200원
이송처치료 총액(①+②+③+④)					원
이용자명				이용자 생년월일	
납부자명				이용자와의 관계	
이송 중 처치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송기관명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법정분류: 1. 수액제제, 2. 에피네프린, 3. 이미오딘, 4. 주사용 비마약성통제제, 5.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6.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7. 흡입용 기관확장제, 8. 스프레이

[illegible]

별첨 4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신설 2017. 12. 1.>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구급차 등 구분		[] 일반 구급차		[] 특수 구급차		[] 항공기		[] 선박		[] 기타							
공통	운용기관명																
	통보(신고)번호																
	제작 연월일																
	차대번호	등록번호															
구급차	자동차 최초등록일																
	운행연한	최초 운행연한															
		1차 연장 운행연한															
		2차 연장 운행연한															
		3차 연장 운행연한															
4차 연장 운행연한																	
운행기록																	
연행일	연행내역				환자내역				응급구조사 및 처치기록								
	출발지	출발시간	도착지	도착시간	연행거리 (km)	주행거리 (km)	누적 주행거리 (km)	연행목적 (번호)	환자성명	환자를 제외한 탑승자 수	응급구조사 성명	응급구조사 자격번호	출동 및 처치 기록 작성 유무	미착성 사유	운전자 성명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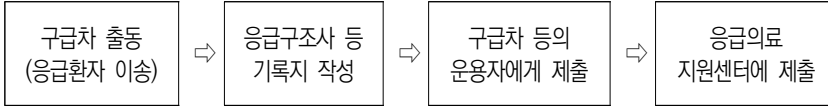
297mm×210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운행기록대장 작성방법 (빈칸이 없이 모두 기입하도록 한다)

1. 운행일은 월-일로 기입
2. 출발지와 도착지는 구체적인 장소명으로 기입 (의료기관인 경우 의료기관명)
3.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은 24시간제로 기입
4. 운행목적은 다음 중 하나를 골라 번호로 표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① 응급환자의 이송, 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 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③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④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⑥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적추장에 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⑦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⑧ **지동차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을 유지 정비(자동차 정기검사, 주유 등)하기 위한 불가피한 운행의 경우**
5. 환자를 이송한 경우 환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환자의 보호자나 다른 동승자가 있을 경우 그 명수를 기입할 것)
(환자 및 응급구조사, 운전사의 명수는 제외하고 순서로 환자외에 탑승한 다른 동승자가 있을 경우 그 명수를 기입할 것)
6. 응급구조사 성명과 자격번호를 기입
7. 출동 및 처치기록지 작성여부에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
8. 만약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미작성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입
9. 운전자의 성명과 옆 칸에 서명

붙임 5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제출방법

○ 제출 체계



○ 제출 대상

- 응급의료법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 제출 기한

- 매월 작성된 '출동 및 처치기록지'는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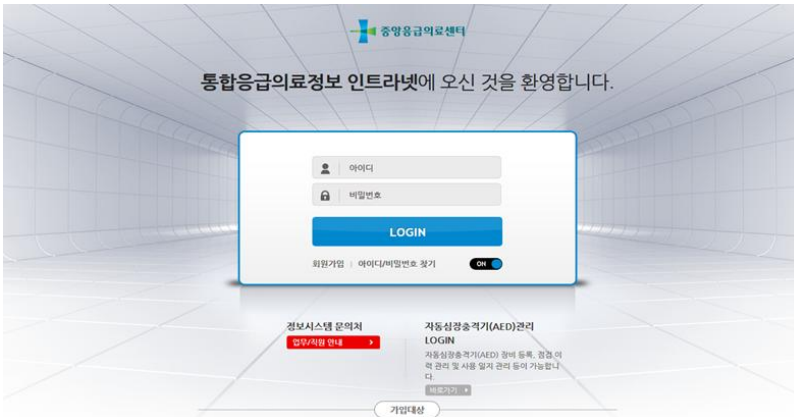
○ 제출 방법

1) 전자제출 방식(시스템 등록)

-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관리·운영하는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사용자 인증 후 직접 자료를 등록 제출하는 방식

〈전자제출 방식(시스템 등록) 방법〉

-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http://portal.nemc.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사용자 인증 후 로그인하여 정보를 등록 함



- 회원가입: 처음 방문자는 회원가입 후 인증을 받아야 사용 가능 함

- ① 약관동의: 이용 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확인 및 체크 후 '동의'
- ② 본인인증: "I-PIN 또는 안심본인 인증"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인증하기'
- ③ 회원정보 입력: 인증 후 회원정보입력 화면에 모든 항목 기입 후 '회원가입' 클릭
 - 사용자명은 입력 담당자로 하며, 기관은 [기관검색] 버튼을 활용하여 해당 소속 기관을 선택 (소속 기관이 없을 시, 응급의료지원센터로 연락하여 기관등록 요청)

[illegible]

- 출동 및 처치기록지 등록/수정
- 로그인(<http://portal.nemc.or.kr>) 및 메뉴 찾기

- LOGIN ⇒ 출동 및 처치 기록 ⇒ 출동및처치기록지 등록관리

〈출동 및 처치기록지 등록관리〉

- ① 등록 현황: '출동 및 처치기록지' 검색 조건을 선택하여 조회 가능
- ② 현황 목록: '출동 및 처치기록지' 조회된 등록 현황 목록 확인 가능
- ③ 등록: '출동 및 처치기록지' 전자문서 등록 가능
- ④ 확인 및 수정·삭제: 입력내용 확인 및 수정 가능
※ 전자문서로 제출된 출동 및 처치기록지는 등록 후 7일 이내에만 수정·삭제 가능
- ⑤ HELP 메뉴: 등록관리 시 주의 또는 자주 문의하는 내용 답변 메모

〈출동 및 처치기록지 등록방법〉

I. 기본정보

■ 기본정보

등록구분	직접제출
운송기관	의송차량 *
	1 Q 검색

- ① 차량검색: 구급차 차량 번호는 검색하여 입력

② 조회구분 선택 후 검색

- 현재 운행중인 차량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 제출 시 현황 정보에서 조회
- 과거 보유했던 구급차량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 제출 시 이력 정보에서 조회

③ 차량번호 목록: 제출하고자 하는 차량번호 선택

II. 요청 및 출동에 관한 사항

■ 요청 및 출동에 관한 사항

① 요청 및 운행과정 일시 등록

- 요청일시: 구급차 출동 요청을 받은 연월일 및 시각 작성
 - 출동일시: 구급차가 출동을 시작한 연월일 및 시각 작성
 - 현장도착일시: 구급차가 출동장소에 도착한 연월일 및 시각 작성
 - 이송개시일시: 현장(보내는 기관)에서 환자를 태우고 출발한 연월일 및 시각 작성
 - 이송종료일시: 기관(시설)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한 연월일 및 시각 작성
- ※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실 앞에 주차되어 '요청-출동-현장도착 일시'가 차이나지 않을 수 있으며, 운행과정 기록(입력)으로 과거시간 입력 시 오류 메시지 발생

② 이송의 종류 및 요청·도착 기관 등록

- 요청자(기관): 최초 구급차를 요청한 성명(기관명)과 연락처 작성
 - 기관등록은 검색하여 등록하며, 현장(개인, 택시 등)에서 요청 시에만 직접 작성 가능
- 이송종류: '현장이송'(출발지가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간 이송'(출발지와 도착지 모두 의료기관인 경우), '기타이송'(도착지가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중 선택
- 출발지 주소: 이송을 위해 구급차가 도착한 현장의 주소(다만, 주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주요 도로 또는 건물명으로 작성)
- 출발지 명칭: 이송을 위해 구급차가 도착한 현장의 기관명을 작성
- 도착기관 명칭: 환자가 이송된 기관(시설)의 명칭을 작성
 - 도착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택시, 요양원, 헬기인계점, 장례식장 등' 선택

- ③ 이송거리: 구급차에 이송환자 탑승 후부터 도착기관(시설)까지의 거리를 작성
- ④ 인계·인수·지도 의사 및 통신방법 등록
- 환자인계의사: 환자를 보내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번호와 성명을 작성
 - 반드시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인계의사가 없을 시 미작성
 - 환자인수의사: 환자를 받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번호와 성명을 작성
 - 반드시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인수의사가 없을 시 미작성
 - 의료기관 이송 시 면허번호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미취득'을 선택하며, 의료기관이 아닌 곳으로 이송 시 '해당없음'을 선택
 - 이송지도의사: 이송 중 실제 의료지도를 수행한 의사의 소속과 성명을 작성
 - '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경미한 응급처치)에 의거 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로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 선택
 - 의사통신방법: 이송지도의사와 통신방법을 작성
 - 전화(전화번호 기재), TRS(LTE) 무선기 및 기타로 구분하며, 2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로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⑤ 의료기관 선정
- 의료기관선정자: 이송의료기관을 선정한 자로, 환자/보호자, 의사, 구급대(이송자),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
 - 선정이유: 이송의료기관을 선정한 이유로, 치료받던 병원, 전문치료가능, 근거리, 환자/보호자 원함,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
 - 선정방법: 이송의료기관을 선정한 방법으로, 이송정보체계, 직접연락, 구급상황관리 센터, 자체판단,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

Ⅲ. 인적사항

1 인적사항

환자성명 *		☐ 확인불가	연락처 *		☐ 확인불가
생년월일 *		☐ 확인불가	성별 *	☐ 남 ☐ 여	☐ 확인불가
환자주소 *			주소찾기	☐ 확인불가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관계	☐ 없음 ☐ 부모 ☐ 자녀 ☐ 친척 ☐ 친지 ☐ 기타				

- ① 환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 환자성명: 환자 성명을 작성하며,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불가' 선택
 - 생년월일: 환자 생년월일을 작성하며,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불가' 선택
 - 연락처: 환자 연락처를 작성하며,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불가' 선택
 - 성별: 환자 성별을 작성하며,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불가' 선택
 - 환자주소: 환자 주소를 작성(주소찾기)하며,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불가' 선택
 - 보호자 성명 및 연락처: 보호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
 - 관계: 환자와의 관계를 작성
 - '친척'(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이나 집단, 친족과 외척), '친지'(서로 잘 알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 배우자는 '기타'로 작성

IV. 출발시 환자상태에 관한 사항

● 출발시 원자상태에 관한 사항

중요도 *	① 중요 ② 비중요 ③ 사망	분류 *	① 일반 ② 질병역
원상질병명 *	/ Q 코드검색		
의식수준 *	① A ② V ③ F ④ U	생체징후	합합 : / 맥박수 : 호흡수 : 체온 : °C
출발시 저지상태 *	1.기도 : ☐ 없음 ☐ 기도개 ☐ LMA ☐ 기관내삽관 ☐ 기관절개 ☐ 기타 () 2.로프 : ☐ 없음 ☐ BVM ☐ 인공호흡기 ☐ 비관 ☐ 마스크 ☐ 산소주머니 () 3.순환 : ☐ 없음 ☐ 코심티드 ☐ 정맥표1(수역량/전여량) (/) ☐ 정맥표2(수역량/전여량) (/) 4.약물 : ☐ 없음 ☐ 약물1(용량/전여량) 선택 ▼ (/) ☐ 약물2(용량/전여량) 선택 ▼ (/) 5.고장 : ☐ 없음 ☐ 갈증 ☐ 저혈 ☐ 상처 ☐ 하지 기타 () 6.기타 : ☐ 없음 ☐ 비취관 ☐ 도뇨관 ☐ 중심정맥 기타 ()		
	기타 소견 및 처치		

① 환자 중증도 및 상태

- 중증도: 환자의 응급증상 해당유무를 나타내며, '응급, 비응급, 사망' 중 선택
 - '응급'(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비응급'(응급으로 분류되지 않는 증상), '사망'(환자가 사망한 경우)
- 분류: '질병'(질병에 의한 경우), '질병외'(각종 사고 등에 의한 경우) 중 선택
- 의심질환명: 이송 당시 환자의 병명 또는 주증상(코드검색)을 통해 작성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코드 기준으로, 검색 불가 시 '기타' 선택 후 작성
- 의식수준: A(Alert) 명료, V(Verbal response) 소리에 반응, P(Pain response) 통증에 반응, U(Unresponse) 반응 없음으로 구분하여 선택
- 생체징후: 환자의 혈압(수축기/이완기), 맥박수 및 호흡수(분당), 체온(℃)을 작성

② 출발 시 처치사항

- **출발 시 처치상태:** 출발할 당시 현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이미 실시한 처치 및 투약 상태 등을 확인하여 작성(약품명 및 수액명은 줄임말이 아닌 전체이름으로 작성)
※ 주의: 정맥로(1·2)와 약품(1·2)의 잔여량은 확인한 시점의 잔여량을 작성(약품의 규격이나 투여량을 적는 것이 아님)
- 기타 소견 및 처치: 환자와 관련된 기타 소견 및 처치가 있는 경우 작성

V. 이송 중 경과 및 처치에 관한 사항

1 이송 중 경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의상수준 *	☐ A	☐ V	☐ P	☐ U	생체징후	혈압	/	맥박수	/	지/비 호흡수	/	지/비 재온	℃
2 이송도착시 지지상태 * ☒ 상동	1.기도: ☐ 없음 ☐ 기도기 ☐ LMA ☐ 기관내삽관 ☐ 기관절개 ☐ 기타 ()												
	2.호흡: ☐ 없음 ☐ BVM ☐ 인공호흡기 ☐ 비관 ☐ 마스크 ☐ 산소투여 ()												
	3.순환: ☐ 없음 ☐ 모니터링 ☐ 정맥로1(수역량/산여양) () / () ☐ 정맥로2(수역량/산여양) () / ()												
	4.약물: ☐ 없음 ☐ 약물1(용량/산여양) 선택 () / ()												
	☐ 약물2(용량/산여양) 선택 () / () ☐ 약물3(용량/산여양) 선택 () / ()												
기타 소견 및 조치	5.고정: ☐ 없음 ☐ 경추 ☐ 척추 ☐ 상지 ☐ 하지 ☐ 기타 ()												
	6.기타: ☐ 없음 ☐ 비워둠 ☐ 도뇨관 ☐ 중심정맥 ☐ 기타 ()												

① 이송 중 환자 상태

- 의식수준: A(Alert) 명료, V(Verbal response) 소리에 반응, P(Pain response) 통증에 반응, U(Unresponse) 반응 없음으로 구분하여 선택
- 생체징후: 환자의 혈압(수축기/이완기), 맥박수 및 호흡수(분당), 체온(℃)을 작성

② 이송 중 처치사항

- 이송/도착 시 처치상태: 이송 중 실시한 환자 처치 및 투약 등의 내용을 작성 (약품명 및 수액명은 줄임말이 아닌 전체이름으로 작성)
※ 주의: 정맥로(1·2)와 약품(1·2)의 잔여량은 확인한 시점의 잔여량을 작성(약품의 규격이나 투여량을 적는 것이 아님)
※ “상동”: 출발 시 처치상태와 동일한 경우 “ 상동” 버튼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
- 기타 소견 및 처치: 환자와 관련된 기타 소견 및 처치가 있는 경우 작성

VI. 이송차량 및 이송자 등에 관한 사항

1 이송차량 및 이송자 등에 관한 사항

구분	소속기관	종별(차량, 자격, 면허)	번호 (등록, 자격, 면허)	성명
이송차량		☐ 특수 ☐ 일반 ☐ 헬기 ☐ 기타		
운전자 *	 상동 * 반드시 소속기관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자 *	 상동 * 반드시 소속기관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간호사 ☐ 의사 ☐ 약사 ☐ 기타		

2  저장  닫기

① 이송차량, 운전자, 동승자 정보

- 이송차량: 소속기관명, 차량의 구분(특수, 일반, 헬기, 기타), 차량번호를 작성
· 시스템 입력의 경우 기본정보를 선택하면 ‘이송차량’ 정보 자동 작성
- 운전자: 이송차량 운전자의 소속기관, 면허번호 및 성명을 작성
- 동승자: 이송차량 동승자의 소속기관, 자격(면허) 구분과 번호를 적고 성명을 작성 (‘동승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만 작성)
※ “상동”: 이송차량 소속기관명과 동일한 경우 “ 상동” 버튼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

② 출동 및 처치기록지 저장

- 저장: 모든 필수항목(*) 작성(입력) 완료 후 “저장” 버튼을 클릭 시 제출 완료

〈출동 및 처치기록지 수정·삭제 방법〉

- ※ 전자문서로 제출된 출동 및 처치기록지는 등록 후 7일 이내에만 수정·삭제 가능
- 등록한 자료의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등록관리 메뉴에서 현황 목록을 조회 후 선택하고, 정보를 수정한 다음 ‘수정(삭제)’ 버튼 클릭
· 등록 후 7일 이후 ‘수정·삭제’ 버튼 비활성화

〈등록 7일 이내〉  수정  삭제  인쇄  닫기 ⇨ 〈등록 7일 후〉  인쇄  닫기

- 2) 모사전송(FAX) 방식(아래의 연락처 참고)
 - 소재지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모사전송(FAX) 직접 전송
※ 자료 전송 후 반드시 관리 담당자의 수신 여부 확인 필요
- 3) 우편배송(택배포함) 방식(아래의 연락처 참고)
 - 소재지 응급의료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택배 배송(단 수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 하여여 함)
- 4) 전자우편 방식(아래의 연락처 참고)
 - 제출 자료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 후 반드시 소재지 응급의료지원센터 제출관리 담당자의 수신 확인 필요
- 5) 방문 제출
 - 소재지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 ‘전자제출 방식(시스템 등록)’ 이외의 방식으로 제출 시 필수항목 누락 또는 식별이 불가한 처치기록은 반송 조치됨!

〈출동 및 처치기록 관련 자주하는 질문〉

I. 출동 및 처치기록 작성에 관한 일반 문의

(Q1) 출동 및 처치기록은 어떤 경우에 작성하나요?

(A1) ‘응급구조사등’(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작성)이 출동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는 작성해야 합니다.

(Q2) 의료기관이 아닌 의무실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로 경미한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도 출동 및 처치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A2) 경미한 환자라도 ‘응급구조사등’이 출동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는 작성해야 합니다.
(응급의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참조)

(Q3) 본 기관에서는 구급차가 출동할 일이 없습니다. 주유나 행사 등으로 출동하는 경우에도 출동 및 처치기록을 작성해야 하나요?

(A3) 환자 이송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며, 구급차 운행 시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별지 제16호의2서식]은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Q4) 의료기관의 구급차가 아닌 위탁업체 구급차(또는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는 출동 및 처치기록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A4) 위탁업체에서 직접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탑승한 동승자(응급구조사등)가 작성해야 합니다.

(Q5) 의료기관에서 자택으로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는 이송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나요?

(A5) 환자를 자택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기타 이송’에 해당 됩니다.

〈이송의 종류 구분〉

- 현장이송: 출발지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도착지가 의료기관인 경우
- 의료기관간 이송: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의료기관인 경우
- 기타이송: 도착지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Q6) 의식수준의 A.V.P.U가 무엇인가요?

(A6) 의식상태 분류방법으로, A(Alert) 명료한 상태, V(Verbal response) 소리에 반응하는 상태, P(Pain response) 통증에 반응하는 상태, U(Unresponse)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Q7) 이송 중 이송지도의사에게 의료지도를 받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7)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내에서는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행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의료지도 없이 해당 범위 내 처치가 이루어졌다면 사실에 근거해 작성해야 합니다.

(Q8) 환자를 타병원으로 이송한 후 대기하다가 다시 본병원으로 이송(회송)한 경우에는 출동 및 처치기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8) '응급구조사등'(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작성)이 출동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는 작성해야 합니다.

(Q9) 출동 및 처치기록은 몇 부 작성해야 하나요?

(A9) 출동 및 처치기록은 총 3부 작성하여 1부(원본)는 구급차 등의 운송자가 보관(3년간)하고, 1부는 응급환자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부는 이송처치로 징수용(이송처리용 영수증과 별개)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응급의료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출동 및 처치기록은 다음달 10일까지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Q10) 닥터헬기로 환자를 이송할 경우 헬기 계류장(인계점)까지 구급차를 이용 하는데 출동 및 처치기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10) 구급차등 이용에 따른 출동 및 처치기록을 각각(구급차, 닥터헬기)작성해야 합니다.

II. 출동 및 처치기록 제출 및 보관에 관한 일반 문의

(Q11) 출동 및 처치기록을 시스템에 등록·제출하였는데도 보관해야 하나요?

(A11) 네, 그렇습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의해 구급차등의 운송자는 응급구조사 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동 및 처치기록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Q12) 출동 및 처치기록을 환자 보호자에게 교부해야 하나요?

(A12) 네, 그렇습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의해 출동 및 처치기록은 3부 작성하여 응급환자를 인수한 의사의 서명을 받은 뒤, 그 중 1부는 이송처치로 징수용(이송처리용 영수증과 별개)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Q13) 출동 및 처치기록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 시스템에 등록 제출이 가능한가요?

(A13) 법적 제출기한이 지난 출동 및 처치기록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Q14) 필수항목인 환자 '인수의사의 면허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스템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A14) 부득이하게 면허번호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미취득”으로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으며, '기타이송'은 도착지가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로 “해당없음”으로 등록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인수의사 면허번호, 성명 및 서명'은 환자의 안전한 이송, 연속적인 치료유지 및 사후관리 확인을 위해 필수적 사항으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모든 환자의 경우 취합하고 있습니다.

(Q15) 출동 및 처치기록을 반드시 전산(시스템)으로 등록 제출해야 하나요?

(A15)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전산(시스템) 등록이 아닌 직접제출(FAX, 우편 등)의 경우 필수 항목이 누락되거나 기록확인이 어려운 경우 반송처리 되므로 유의하여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III.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출동 및 처치기록) 등록에 관한 일반 문의

(Q16) 출동 및 처치기록을 시스템에 등록·제출 후 오류사항 발견 시 수정할 수 있나요?

(A16) 등록일 기준 7일 이내에만 수정·삭제가 가능하며, 이후 수정·삭제는 불가합니다.

(Q17) 출동 및 처치기록을 시스템에 등록 시 사용자 계정(ID)을 공용으로 사용 가능 한가요?

(A17)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사용자는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관정보는 통합관리 되므로 사용자별 승인을 받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Q18) 출동 및 처치기록을 시스템에 등록 시 등록(저장)되지 않고 계속 로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A18) 입력항목 중 특수문자(“ ’ ; : ? [] { }”)가 사용된 테이블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수정·변경해야 합니다.

IV. 기타(구급차)에 관한 일반 문의

(Q19) 구급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동일해도 되나요?

(A19) 운전자가 응급구조사등의 자격(면허)을 가지고 있더라도 응급구조사등 탑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해 출동할 때에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등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을 항상 구급차에 탑승시켜야 합니다.

♣ 출동 및 처치 기록 관련 응급의료지원센터 연락처

지원센터	사무실 전화	팩스번호	우편번호	주소
서울응급의료 지원센터	02-2133-7542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관리팀
	02-2133-7541			
부산응급의료 지원센터	051-254-3114	051-254-3112	49241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전문질환센터 T동 2층
	051-254-3119			
대구응급의료 지원센터	053-427-0530	053-710-7234	41944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115(삼덕동) 진석타워즈 20층
	053-252-1157			
인천응급의료 지원센터	032-440-3254	032-716-6854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4층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팀
	032-440-3255			
광주응급의료 지원센터	062-233-1339	062-226-1339	61453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 3관 로비층
	062-236-1339			
대전응급의료 지원센터	042-223-5101	042-223-5102	35015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대사동) 충남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5층
	042-223-5100			
울산응급의료 지원센터	052-229-3555	052-700-7131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시청 제1별관 5층 식약안전과
	052-229-3554			
세종응급의료 지원센터	044-300-5725	044-300-3829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세종특별자치시청 4층 405호 보건정책과
경기응급의료 지원센터	031-243-4754	031-8001-1501	1645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갯매산로 51 에스알프라자 6층 31호
	031-243-4753			
강원응급의료 지원센터	033-748-4911	033-748-4910	26426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문창모기념관 5층
	033-748-4909			
충북응급의료 지원센터	043-266-6124	043-260-8754	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병원 동관 1층
	043-266-6137			

지원센터	사무실 전화	팩스번호	우편번호	주소
충남응급의료 지원센터	041-634-9351	0303-0948-2626	32256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의항로 263, 305B호
	041-634-9352			
전북응급의료 지원센터	063-276-9573	063-276-9574	5490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건지로20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1층
	063-276-9572			
전남응급의료 지원센터	061-274-1339	061-272-1330	58643	전라남도 목포시 중화길 16 3층
	061-273-1337			
경북응급의료 지원센터	054-441-1339	054-715-3583	39287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10길 17 2층
	054-441-1338			
경남응급의료 지원센터	055-286-9548	0303-0954-9546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경남도청 본관 B112
	055-286-9549			
제주응급의료 지원센터	064-710-2339	064-710-2919	631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3별관 2층 보건건강위생과

붙임 6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운용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급차등 구분	[] 특수 구급차, [] 일반 구급차, [] 선박, [] 항공기			
	공통	등록번호		
		제작연도		
	구급차	차대번호		
자동차 최초등록일				

의료장비 등 보유현황

연번	명칭	규격	수량	연번	명칭	규격	수량
1				6			
2				7			
3				8			
4				9			
5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신고)합니다.

소유자(대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7 구급차 기준 등 점검표

구급차 운용현황 점검표 (표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운용상황 및 실태 점검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운용기관명 (대표 : 대표자성명))의 자체 점검 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이 따름을 잘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감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들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구급차들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18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고 구급차들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년 월 일			
운용기관명 : _____			
대표자 : _____ (인 또는 서명)			
※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등 양식을 통일하게 활용하되, 공문으로 제출하는 경우 표지 생략 가능.			

1. 운용기관 개요

1. 기본사항				
①운용기관명 (개인일 경우 이름)	②사업자 등록번호 (개인일 경우 생년월일)			
③대표자명	④대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⑤대표자 성별 ☐ 남 ☐ 여	
⑥운용기관 소재지 주소	⑦소재지 우편번호			
⑧운용기관 전화번호	() -	⑨운용기관 개설(설립)일	년 월 일	
⑩응급응급차구분 (해당함에 체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요기관 개설신고(허가)번호 :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미사회 관리부서: 책임자:		
	☐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들을 둘 수 있는 자	☐ 스키장업자 관리부서: 책임자:		
		☐ 차량자통차경주업자 관리부서: 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관리자명: 면허: 의사 / 간호사 () 면허번호 호		
⑪구급차운용현황	구급차	구급차수	총 대 특수구급차 대 일반구급차 대	
	합승가능 인력	응급의료종사자	총 명	응급구조사1급: 명 응급구조사2급: 명
		운전자	총 명	외사: 명 간호사: 명
	법 제50조에 따른 지도의사 이름 :		외사면허번호: 호 전문의과목:	
	(의료기관은 이해당)		소속의료기관: 연혁차: () ~	
⑫응급환자이송업 및 비영리 법인 추가기재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보유 / 미보유		
	휴게실 및 대기실	보유 / 미보유		
	교육훈련시설	보유 / 미보유		

2. 구급차 현황 (서부시청은 ③의 서식을 이용, 차량별로 작성하여 첨부)															
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자동차 등록종상 차명	구급차 구분	제작 년월일	자동차 등록일	주행 거리** (검시일)	위탁운용여부 (의뢰기관명)	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자동차 등록종상 차명	구급차 구분	제작 년월일	자동차 등록일	주행 거리** (검시일)	위탁운용여부 (의뢰기관명)
1	03-10000	그랜드스타 렉스 특수구급차	특수	2016 08.06	2020 01.01	54000 (15531)	서울00병원 위탁	8	03-10000	그랜드스타 렉스 특수구급차	특수	2016 08.06	2020 01.01	54000 (15531)	서울00병원 위탁
2	03-10000	그랜드 스타렉스	일반	2017 08.06	2018 01.01	95400 (15228)	자체운용	9	03-10000	그랜드 스타렉스	일반	2017 08.06	2018 01.01	95400 (15228)	자체운용
3								10							
4								11							
5								12							
6								13							
7								14							

- * 반드시, 자동차등록증부에 따른 제작년월일 및 자동차등록일을 기재.
- ** 자동차등록증상 가장 최근의 자동차 검사시에 확인된 주행거리(km)와 검시날짜를 기재

② 구급차 탑승인력 현황 (단, 방한담 이상 의뢰기관은 ①과 ②에 모든 해당 인력 수를 숫자로 표기하고, 이르면 소속 응급구조사 운전사만 기재)

1. 응급의료종사자 (응급구조사 등)								
번호	이름 (가나다순)	생년월일	자격(면허) 종별구분	자격(면허) 취득일	'00년 보수교육일	입사일	'00년 00~00월 구급차 탑승건수	4대보험 가입여부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	- . -	- . -		
9		- . -		- . -	- . -	- . -		
10		- . -		- . -	- . -	- . -		
11		- . -		- . -	- . -	- . -		
12		- . -		- . -	- . -	- . -		
13		- . -		- . -	- . -	- . -		
14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의뢰인일 경우 면허명 (외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일 경우 급수까지 표기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2급)

2. 운전사								
번호	이름 (가나다순)	생년월일	운전면허 종별구분*	운전면허 취득일	응급처치교육일** (가장 최근 1회)	입사일	700년 00~00월 구급차 탑승건수	4대보험 가입여부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 1종 대형, 1종 보통 등, 2종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3] 운용기관 구급차 현황 (구급차 1대당 1부씩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

1. 기본사항					
▶ 자동차등록증 기재 사항					
자동차 등록증번호 : 제		호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①자동차 등록번호		②차 종		③용 도	
④차 명		⑤형식 및 모델연도			
⑥차대번호		⑦원동기형식			
⑧사용본거지		⑨소유자 성명 (명칭)			
⑩검사유효기간 및 주행거리	(가장 최근 받은 검사 가온)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행거리 : km)				
▶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사항					
⑪제적년월일	년 월 일				
▶ 자동차 보험 및 운행기록 관련 사항					
	가입보험사	보험가입자명	보험증권번호	민기일	
⑫책임보험				년 월 일	
⑬중합보험 (책임보험 포함 □)				년 월 일	
⑭구급차 운행기록 대장	□버치 □미버치				

▶ 신고(통보)·허가 필증 부착 증명 사진	
※ 제출 기준: 긴 변이 가로가 되도록 촬영.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사진 파일 첨부, 필름 카메라 또는 인화한 경우 3×5 사이즈 사진을 원력으로 함	
㉔ 필증 부착 사진(1)	㉔ 필증 부착 사진(2)
- 차량 앞면에 부착된 신고필증을 근접 촬영 - 촬영한 필증이 사진의 위아래 높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크게 촬영	- 구급차 정면을 사진에 가득 채도록 촬영 - 단, 필증 부착 위치가 사진 상으로 식별 가능하여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이 사진에 같이 나오도록 촬영

2. 구급차의 형태, 표시 및 내부 기준						
(※ 「구급차의 기준 및 종급한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구급차 관리·운용 지침」을 참고하여 해당사항 체크표시 또는 내용기계)						
①구급차의 종류	☐ 일반구급차 ☐ 특수구급차					
②구급차의 표시	비탕색 (원색) ☐ 흰색 ☐ 흰색아님	녹십자 표시 (전후좌우 등 2면 이상) ☐ 예 ☐ 아니오	가로로 띠 표시 (일반구급차: 녹색 / 특수구급차: 적색) ☐ 녹색 ☐ 적색	글씨 표기 (일반구급차: 응급출동 / 특수구급차: 응급출동) ☐ 한자이송 또는 한자후송 ☐ 응급출동	기관 명칭 및 전화번호 표시 ☐ 표시 ☐ 미표시	
③원자실	길이 운전석과의 구획칸막이에서 뒷문의 안쪽면까지 250cm이상		너비 간이침대를 바닥에 고정시켰을 때 적어도 한쪽면과의 통로가 25cm이상	높이 한자실의 바닥에서 천장 안쪽 면까지의 높이 일반구급차: 120cm이상 특수구급차: 150cm이상		
④내부장치	일반구급차			특수구급차		
	cm			cm		
	간이침대	☐ 있음 ☐ 없음(특수구급차는 표기하지 말 것)	간이침대 (절이식, 네바퀴)	☐ 있음 ☐ 없음		
	보조등갓	☐ 있음 ☐ 없음	긴 의자	☐ 있음 ☐ 없음		
	갈고리	☐ 있음 ☐ 없음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	☐ 있음 ☐ 없음		
	의료장비함	☐ 있음 ☐ 없음	교류발생장치	☐ 있음 ☐ 없음		
	응급의료인력석	☐ 있음 ☐ 없음	※ 특수구급차는 좌측의 일반구급차란(간이침대는 제외)을 모두 기재한 뒤 추가로 위 사항을 기재			
	조명장치	☐ 있음 ☐ 없음				
	이동용 조명장치	☐ 있음 ☐ 없음				
환풍기	☐ 있음 ☐ 없음					
전기공급장치	☐ 있음 ☐ 없음					

· 표시에 관한 사항에 있어 소방구급차는 별도 기준에 따름

3. 구급차의 의료장비										
구분		제품명		의용기기 허가(신고)번호	제조업체 (또는 수입 업체)상호	사용 (유효) 기간	저장방법 및 확인			적용여부 (개수)
		품목명	형명(形名)				온도	습도	준수 여부	
일반 · 특수 공통	신체검진	세은계								작동/교장
		청진기								개
		휴대용혈압계								작동/교장
		휴대용 산소포화 농도 측정기								
	기도확보 유지	구인도기도기								개
		비인도기도기								개
	호흡유지	성인용 마스크	인면 마스크							개
			비재호흡마스크							개
			백열브이 마스크							개
		소아용 마스크	인면 마스크							개
			비재호흡마스크							개
			백열브이 마스크							개
		의료용 산소발생기								작동/교장
		산소공급장치								작동/교장
		전동식 의자용 환자리프트 (Suction)								작동/교장

3. 구급차의 의료장비										
순환유지		정맥주사세트	☐ 있음 ☐ 없음							
외상처치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	☐ 압박붕대 ☐ 밀봉거즈 ☐ 반창고 ☐ 지혈대 ☐ 라텍스장갑 ☐ 비닐장갑 ☐ 가위 ☐ 약품상자 ☐ 폐기물보관통 ☐ 기타()							
구분		제품명		의용기기 허가(신고)번호	제조업체 (또는 수입 업체)상호	사용 (유효) 기간	저장방법 및 확인			적용여부 (개수)
		품목명	형명(形名)				온도	습도	준수 여부	
특수	신체검진	환자검시장치								작동/교장
		혈당측정기								작동/교장
	기도확보 유지	후두경								작동/교장
		기도삽관튜브								개
	호흡유지	의료용 분무기								작동/교장
		휴대용 간이인공 호흡기(자동식)								작동/교장
		자동심장충격기 (AED)								작동/교장
	심장·폐·혈액 순환유지	절무목								개
		공기 또는 진공무목								개
		경추보호대								개
		척추보호대								개

4. 구급자의 구급의약품									
법정분류	명칭 (상품명)	제조사	용량 (ml or cc)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	저장방법 및 확인			수량	비고
					온도	용기	준수 여부		
일반 · 특수 장비 · 특수	수액제제 (생리식염수 등)								
	에피네프린								
	아미오다론								
	생리식염수 (상처세척용)								
	알콜(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								
특수	포비돈액								
	주사용 비이락성 진통제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용)								
	흡입용 기관확장제								

· 수량은 유효기간별 기재

5. 기타장비 등						
(※①②③는 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운용자에 한해 필수 기재, ④⑤⑥은 강력한 운용자만 선택적으로 기재)						
법정구분	제품명	제조업체	제품번호	정보관리책임자	정보백업주기	장비검정일시 (가장 최근)
①운행기록장치						
②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 등)						
③요금미터						
④신용카드 결제기						
⑤이송처치요 안내문	차량내에 이용자에게 잘 보이는 곳에 ☐ 부착 ☐ 미부착					
⑥영상정보처리기기						

▶ 요금 미터기·신용카드결제기 부착 증빙 사진 - 법 제44조 제2항의요기관, 제4호(응급환자이송업), 제5호(대한구조봉사회) 필수 제출	
(※ 제출 기준 : 긴 변이 가로가 되도록 촬영,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사진 파일 첨부, 필름 카메라 또는 인화한 경우 36 사이즈 사진을 원형으로 함)	
①미터기 등 부착 증빙 사진(1)	②미터기 등 부착 증빙 사진(2)
▪ 전원을 켜고 미터기에 기본요금인 표시된 상태에서, 미터기 및 카드결제기를 근접 촬영 ▪ 미터기 또는 카드결제기 중 길이가 긴 것을 기준으로 사진 세로 높이의 2/3 이상을 차지하도록 촬영 ※미터기와 카드결제기를 한 화면에 동시에 담아 촬영하기 어려운 경우 각각 촬영하여 2장으로 제출 가능	▪ 미터기 및 카드결제기가 장착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석측 또는 보조석측 문을 열고 차량 밖에서 안쪽으로 미터기 및 카드결제기를 촬영 ▪ 너무 검게 나와 식별 불가능한 사진은 인정치 않음 ※미터기와 카드결제기를 한 화면에 촬영하기 어려운 경우 각각 촬영하여 2장으로 제출 가능

붙임 8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변경신고 3일
운용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급차등 구분	[] 특수 구급차, [] 일반 구급차, [] 선박, [] 항공기		
	공통	등록번호	
		제작연도	
	구급차	차대번호	
		자동차 최초등록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통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 2.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9

재발급 신청서

구급차등 운용([]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운용 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급차등 구분	특수 구급차(), 일반 구급차(), 선박(), 항공기()		
	등록번호		
	제작년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또는 부착용 신고확인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 Ambulance information & Records)

- 구급차의 운용기록* 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전용 ①어플리케이션(APP) 및 ②웹페이지(WEB)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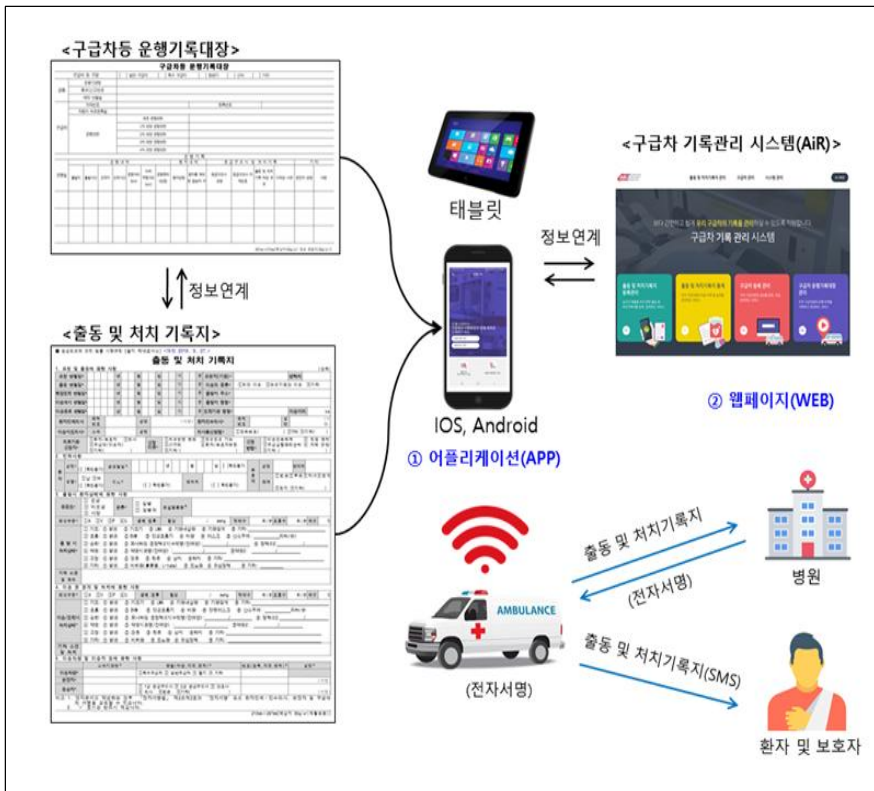
* ‘구급차 운용기록’은 응급의료법에 근거하여 구급차 운행 시 작성하는 기록으로 ‘출동 및 처치기록지’(별지 제16호서식)와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별지 제16호의 2서식)을 말함

※ 어플리케이션(APP) 다운 방법: 앱스토어에서 “구급차 기록 or AiR” 검색 후 설치

※ 웹페이지(WEB) 주소: <https://air.nemc.or.kr>

*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아이디, 비밀번호로 사용 가능

1. 시스템 흐름도



2. 시스템 주요 기능

① 어플리케이션(A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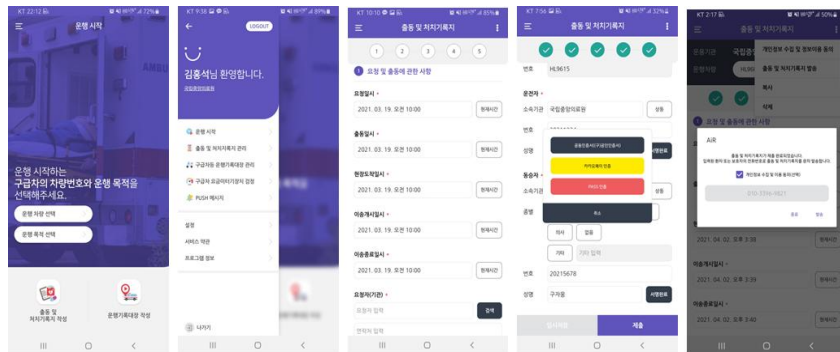


-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운용기록 '작성·등록·조회·삭제' 가능
- 모든 운용기록에 대해 시스템 자동 연계 가능
- 전자서명 및 공인인증(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및 PASS 인증) 기능 추가
- SMS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등록 가능
- PUSH 메시지 전송 기능 추가
- 구급차 요검미터장치 검정 결과 조회 가능

② 웹페이지(WEB)



- 구급차 운용기록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 및 로그인 계정 연동(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계정과 동일 ID/PW 사용)
- 구급차 운용기록 입력·조회·출력 등 정보관리 가능
- 의료기관에서 이송 환자에 대한 정보 조회 및 확인 가능
- 구급차 운용기록에 대한 이송이력 및 실적관리(통계) 가능



메인화면

주요(좌측) 메뉴

처치기록지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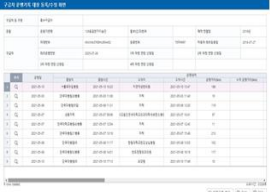
공인인증

SMS 발송

어플리케이션(APP)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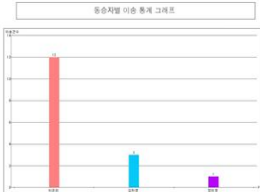
- 출동 및 처치기록지 등록관리
- 출동 및 처치기록지 통계
- 구급차 등록관리
- 구급차 운행기록대장 관리



정보 입력 및 수정-삭제



정보 조회 및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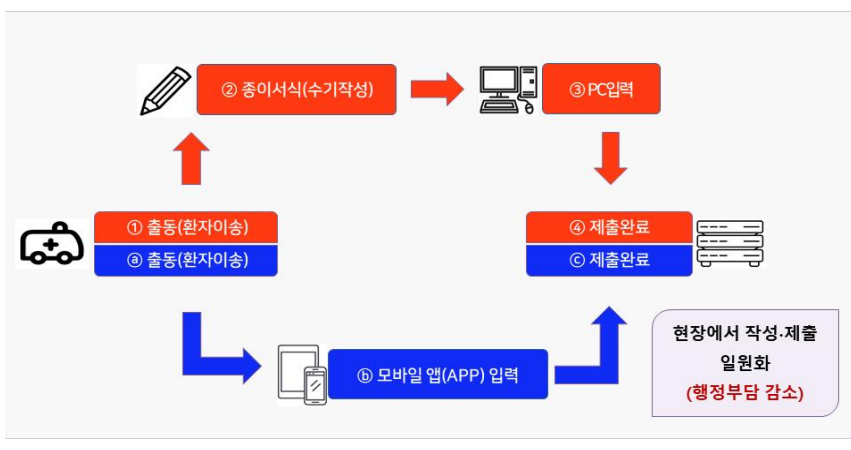
통계 및 그래프

웹페이지(WEB) 소개

3. 시스템 사용 시 효과

[APP] 현장에서 실시간 운용기록 관리

- 기존 관리 방식 ①→②→③→④ 에서 시스템 관리 방식 ②→①→③ 로 간소화됨
- 시스템으로 공인인증을 통해 제출됨에 따라 구급차 운용기록 '작성,보관,제출'에 대한 법적 의무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같음함(종이 서식 작성 및 보관 불필요)



붙임 11 **시·도별 구급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시도	담당과	담당팀	행정번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관리팀	02-2133-7543
부산	보건위생과	의료시설팀	051-888-3421
대구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팀	053-803-6292
인천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팀	032-440-3253
광주	감염병관리과	의약관리팀	062-613-1192
대전	감염병관리과	응급의료팀	042-270-4042
울산	식의약안전과	의약관리담당	052-229-3553
세종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정책담당	044-300-5716
경기	보건의료과	응급의료팀	031-8008-4339
강원	공공의료과	응급의료팀	033-249-2923
충북	보건정책과	의료관리팀	043-220-3143
충남	보건정책과	응급의약팀	041-635-2644
전북	보건의료과	의약응급의료팀	063-280-4684
전남	식품의약과	의료관리팀	061-286-5893
경북	감염병관리과	공공의료자원팀	054-880-3875
경남	식품의약과	응급의료담당	055-211-5055
제주	보건건강위생과	의료수급관리팀	064-710-2333

붙임 12 **시·도별 구급차 신고 현황 (법제44조제1항 관련)**

(2021.12.기준)

시도	구분	합계	국가 및 지자체					의료 기관	산업체 등	환자 이송업	비영리 법인
			소계	지자체	소방청	법무부	경찰청				
합계	계	5,852	2,146	448	1,666	31	1	2,590	82	1,052	9
	일반	2,829	270	234	4	31	1	2,284	65	222	2
	특수	3,023	1,876	214	1,662	-	-	306	17	830	7
서울	소계	760	220	51	168	1	-	258	5	276	8
	일반	362	14	12	1	1	-	226	2	124	2
	특수	398	206	39	167	-	-	32	3	152	6
부산	소계	393	105	27	77	1	-	231	4	49	-
	일반	251	15	14	-	1	-	225	1	10	-
	특수	142	90	13	77	-	-	6	3	39	-
대구	소계	302	84	15	68	1	-	172	-	36	-
	일반	172	4	3	-	1	-	166	-	2	-
	특수	130	80	12	68	-	-	6	-	34	-
인천	소계	290	118	20	97	1	-	134	7	37	-
	일반	138	12	11	-	1	-	121	4	1	-
	특수	152	106	9	97	-	-	13	3	36	-
광주	소계	223	39	8	30	1	-	158	-	26	-
	일반	139	6	5	-	1	-	133	-	-	-
	특수	84	33	3	30	-	-	25	-	26	-
대전	소계	163	45	10	34	1	-	111	-	7	-
	일반	106	6	5	-	1	-	100	-	-	-
	특수	57	39	5	34	-	-	11	-	7	-
울산	소계	119	43	7	36	-	-	53	2	23	-
	일반	56	5	5	-	-	-	43	2	7	-
	특수	63	38	2	36	-	-	10	-	16	-
세종	소계	27	13	2	11	-	-	8	-	6	-
	일반	9	1	1	-	-	-	7	-	1	-
	특수	18	12	1	11	-	-	1	-	5	-

시도	구분	합계	국가 및 지자체					의료 기관	산업체 등	환자 이송업	비영리 법인
			소계	지자체	소방청	법무부	경찰청				
경기	계	1,019	352	66	280	6	-	456	11	223	1
	일반	509	60	54	-	6	-	409	8	37	-
	특수	510	292	12	280	-	-	47	3	186	1
강원	소계	306	171	35	133	3	-	74	10	51	-
	일반	101	21	18	-	3	-	59	10	11	-
	특수	205	150	17	133	-	-	15	-	40	-
충북	소계	234	108	24	83	1	-	84	-	38	-
	일반	93	14	12	1	1	-	69	-	10	-
	특수	141	94	12	82	-	-	15	-	28	-
충남	소계	330	144	24	115	4	1	130	11	45	-
	일반	156	22	17	-	4	1	120	9	5	-
	특수	174	122	7	115	-	-	10	2	40	-
전북	소계	284	116	26	90	-	-	134	2	32	-
	일반	139	15	15	-	-	-	122	2	-	-
	특수	145	101	11	90	-	-	12	-	32	-
전남	소계	359	151	39	109	3	-	144	15	51	-
	일반	139	24	20	1	3	-	102	13	1	-
	특수	220	127	19	108	-	-	42	2	50	-
경북	소계	444	207	49	152	6	-	160	-	80	-
	일반	170	27	21	-	6	-	135	-	9	-
	특수	274	180	28	152	-	-	25	-	71	-
경남	소계	512	179	33	144	2	-	257	10	67	-
	일반	263	19	17	-	2	-	230	10	4	-
	특수	249	160	16	144	-	-	27	-	63	-
제주	소계	87	51	12	39	-	-	26	5	5	-
	일반	26	5	4	1	-	-	17	4	-	-
	특수	61	46	8	38	-	-	9	1	5	-

붙임 13 **시·도별 응급환자이송업 현황**

(2021.12.기준)

연번	이송업체명	운용기관 소재지 주소	연락처	구급차		
				합계	특수	일반
계		125개소		1,052	830	222
서울특별시		22개소		276	152	124
1	(주)129응급구조단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398, 노선상가 2층 201, 202호	02-456-1339	12	5	7
2	쿠팡119응급환자 이송협동조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121-5 (답십리동)	-	15	6	9
3	(주)한국응급구조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5길 60, 기림빌딩 B-02호	02-948-9494	11	8	3
4	(주)EMS명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364 해명빌딩 2층	02-6368-2119	9	6	3
5	9119구급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45길47	02-926-9119	14	10	4
6	(주)서울129구급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발로 66, 2층	02-971-0129	16	5	11
7	24시응급환자이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9-1 (남가좌동)	02-304-0129	8	6	2
8	이엠에스코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90, 201호 (연희동)	02-420-2114	9	5	4
9	(주)이엠에스 응급환자이송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87, 3층 (성산동)	02-313-1339	18	5	13
10	(주)성심환자이송단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14, 502호	02-2691-1339	11	5	6
11	1290이엠에스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87 3층	1522-8482	7	5	2
12	(주)서울911이송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49-5 4층	02-1588-4129	15	7	8
13	(주)선응급환자이송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328	02-853-4455	15	12	3
14	대한911구조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48길18	-	12	9	3
15	클로버이엠에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12, 2층 (신길동)	1833-5129	8	5	3
16	(주)대한 응급환자이송단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77(2층)	02-821-1119	18	11	7
17	(주)엠티케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3 서운빌딩 601호	02-595-1339	10	7	3
18	(주)코리아환자 이송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41, 2층 203호 (거여동, 현대2차 아파트)	02-402-8129	17	10	7
19	(주)중앙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20,	02-413-5129	13	9	4

연번	이송업체명	운용기관 소재지 주소	연락처	구급차		
				합계	특수	일반
	응급환자이송단	LG전자대리점 3층 (석촌동)				
20	주식회사 에스오에스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57번길 20 (성내동)	1800-6534	7	5	2
21	(주)제일 응급환자이송단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62길 9	02-429-1339	20	6	14
22	(주)한성 응급환자이송단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길 19, 3층 (암사동)	02-442-0129	11	5	6
부산광역시		5개소		49	39	10
23	사마리안129구급대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39번길 23	-	12	11	1
24	(주)부산코스비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195 2층, 3층	051-553-6119	19	11	8
25	(주)중앙구일일	부산광역시 서구대영로73번길 116, 2층	051-246-0911	6	6	-
26	(주)비원이엠에스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69번가길 8	051-633-1339	6	5	1
27	(주)부산 응급환자이송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407-1	051-636-1339	6	6	-
대구광역시		6개소		36	34	2
28	(주)골든타임 응급환자이송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61-1, 3층	053-657-8253	9	8	1
29	(주)대구911 응급환자이송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46, 3층	053-283-0911	5	5	-
30	(주)대구 응급환자이송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156(대명동)	053-624-0129	6	6	-
31	(주)메디칼 응급환자이송단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12길 67, 3층	053-423-0119	5	5	-
32	(주)대구이엠에스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351-27	053-627-9913	5	5	-
33	(주)대구VIP 응급환자이송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232, 2층	053-621-0119	6	5	1
인천광역시		5개소		37	36	1
34	(주)129 응급환자이송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53번길 26	032-464-9111	10	10	-
35	(주)월드119구급대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1021	032-504-1339	6	6	-
36	(주)911 응급환자이송단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680	032-777-3119	9	9	-
37	(주)경인응급구조단	인천광역시 서구 송학로 235번길18, 2층	032-563-8911	7	6	1
38	(주)우리119이엠에스	인천광역시 서구 면개포로 34	032-522-1190	5	5	-

연번	이송업체명	운용기관 소재지 주소	연락처	구급차		
				합계	특수	일반
광주광역시		5개소		26	26	-
39	한국sos구급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15번길16, 101동 213호	062-367-7777	5	5	-
40	메디칼이송단	광주광역시 동구 화산로 351번길 4	062-23-9575	5	5	-
41	프로응급환자 이송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24-1, 1층	062-681-1190	6	6	-
42	광주응급환자 이송단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600, 3층	062-223-5129	5	5	-
43	팀코리아이엠에스(주)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693번길20	062-223-9110	5	5	-
대전광역시		1개소		7	7	-
44	129환자이송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921번길 40 (대사동)	042-226-6800	7	7	-
울산광역시		3개소		23	16	7
45	(주)현대 응급이송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139번길 38-1	052-261-4911	8	5	3
46	(주)중앙 응급환자이송단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6길 19	052-292-1339	8	6	2
47	울산에스오에스 이송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12길 1	-	7	5	2
세종특별자치시		1개소		6	5	1
48	충남129 환자이송센터(유)	세종시 장군면 장척로 515	044-866-0129	6	5	1
경기도		28개소		223	186	37
49	(주)경기구급센터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273, 5층 (심곡동, 유진빌딩)	032-663-0129	12	8	4
50	(주)에스오에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65	031-757-6622	8	7	1
51	(주)경기이엠에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17	031-244-1339	12	8	4
52	(주)중앙129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지편2길 80	031-410-0129	6	5	1
53	(주)건국환자 이송센터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2 11번길31	031-454-4129	6	5	1
54	(주)구일일 인명구급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대반길22	031-683-0129	14	12	2
55	(주)하나이엠에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 중앙로37번길 28	031-762-0129	5	5	-
56	(주)129한국이엠에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로 419	031-338-1339	5	5	-

연번	이송업체명	운용기관 소재지 주소	연락처	구급차		
				합계	특수	일반
57	(주)이엠에스프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52번길 3-19	031-762-0129	7	6	1
58	(주)365구급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17	031-286-0365	5	5	-
59	(주)돌핀 응급환자이송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 59	1566-6305	10	9	1
60	(주)네오에쓰앤씨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87-1	1566-5129	6	5	1
61	(주)KBE구급센터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마장로48	031-883-3129	8	6	2
62	(주)이엠에스탑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천문로11, 2층	0507-1361-0158	8	7	1
63	(주)사마리안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38, 3.4층	031-635-0119	5	5	-
64	(주)중앙이엠에스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13번길 223 1층	031-666-0129	5	5	-
65	(주)엠볼콜 사설구급이송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기안길4, 2층	0507-1445-3427	5	5	-
66	(주)샵91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68-1	031-212-0129	6	5	1
67	(주)코리아모빌케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27-0 지하1층, (궁내동, 지하1층)	1644-7253	5	5	-
68	(주)프로응급환자 이송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맷들로 18	031-559-0129	9	8	1
69	(주)이피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8	031-975-1339	6	6	-
70	(주)비사벌메디칼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308번길 26, 2층(평내동)	031-523-8080	7	7	-
71	(주)우리구급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3, (토당동, 하남빌딩2층)	031-922-2229	19	13	6
72	(주)129구급대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촌로 53	031-531-0129	15	10	5
73	(주)AMS코리아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287번길 11	1644-3912	6	5	1
74	(주)이엠에스보람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185번길 23	031-866-4119	5	5	-
75	(주)일산구급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43번길 66	1855-1399	11	7	4
76	케이쿵3119 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27, 3층 (주교동)	031-908-9116	7	7	-
강원도		4개소		51	40	11
77	바른인명구조단	강원도 춘천시 동광길 17, 2층(후평동)	033-253-0129	17	15	2
78	(주)한국1339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631	033-745-1339	7	5	2

연번	이송업체명	운송기관 소재지 주소	연락처	구급차		
				합계	특수	일반
79	(주)강원129이송단	강원도 태백시 편들길 41	033-553-9129	8	7	1
80	(주)129구급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무궁화로 9	033-434-3119	19	13	6
충청북도		5개소		38	28	10
81	(주)충북 응급환자이송단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9	043-222-1129	6	6	-
82	(주)중앙 응급환자이송단	충청북도 충주시 관아2길 22	043-857-1129	11	6	5
83	(주)응급일이구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로25	043-853-1129	5	5	-
84	(주)충청 구급이송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1 순환로577번길 3. 2층 204호	043-264-0129	7	5	2
85	국제응급환자 이송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12 가동 C-102호	043-272-0129	9	6	3
충청남도		6개소		45	40	5
86	129응급환자이송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48-2, 2층	041-552-1129	7	6	1
87	충청응급환자이송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171 (안서동)	041-568-0129	11	10	1
88	(주)하나구급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6길 23 (두정동)	041-622-2119	8	8	-
89	충남구급이송센터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청소큰길 154	041-642-1129	5	5	-
90	129EMS응급센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239	041-633-9110	5	5	-
91	충남129 환자이송센터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석길159 우성아파트상가 201호	041-331-1129	9	6	3
전라북도		5개소		32	32	-
92	(주)국민이엠에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08, 3층	063-272-3230	5	5	-
93	(주)하나구급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34	063-275-1339	5	5	-
94	전북 응급이송이엠에스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76길 33-3	063-851-1339	10	10	-
95	(유)베스트 응급환자이송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330	063-534-0129	5	5	-
96	서해응급이송sos	전라북도 김제시 도작8길 76-17	063-544-1339	7	7	-
전라남도		8개소		51	50	1
97	(유)129이송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동신흥 4길 7	061-741-0129	5	5	-

연번	이송업체명	운용기관 소재지 주소	연락처	구급차		
				합계	특수	일반
98	대한구조단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355-1 (용해동)	061-245-0129	5	5	-
99	전남EMS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140	061-862-0129	9	9	-
100	(주)다온구일일 구급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남산로162, 2층	061-721-1339	7	7	-
101	(유)남도 응급환자이송단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안길 18-1	061-434-0129	5	5	-
102	제일이송단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칠천로 56, 2층	061-374-9575	5	5	-
103	중앙911	전라남도 영광읍 영광읍 신남로217, 2층	061-353-9585	7	6	1
104	(유)한국911 구급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153-2, 3층 (용당동)	1644-9139	8	8	-
경상북도		11개소		80	71	9
105	(주)가디언911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로 64-1, 2층	054-554-0911	5	5	-
106	(주)경북골든타임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211, 2층	054-455-1119	6	5	1
107	(주)경북네오메딕	경상북도 경산시 계양로 16길 79 (사동, 2층)	1566-5129	15	11	4
108	(주)경북세이브타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문예로 79, 3층	054-283-1339	6	5	1
109	(주)경북이엠에스	경상북도 경산시 장산로 23길 9, 2층 (삼북동)	053-814-0129	10	9	1
110	(주)경북이송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154 (2층)	054-823-1339	7	7	-
111	(주)경북코스비	경상북도 안동시 천거리1길 2(용상동)	054-821-1199	6	6	-
112	(주)구급대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59번길 5 301호	054-286-0123	5	5	-
113	(주)대한이송센터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영덕로447	054-732-0094	6	5	1
114	(주)메디컬천사	경상북도 문경시 신흥로 134, 2층	054-552-1290	6	6	-
115	(주)신라응급	경상북도 경주시 초당길 39-12	054-744-1339	8	7	1
경상남도		9개소		67	63	4
116	(주)구오구오 응급구조단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4길 10, 1층	055-941-9595	5	5	-
117	(주)한국응급이송단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1271	055-327-0911	5	5	-
118	(주)E.M.S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길73, 3층	055-252-3119	5	5	-

연번	이송업체명	운용기관 소재지 주소	연락처	구급차		
				합계	특수	일반
119	(주)경남응급이송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412	055-246-1339	9	7	2
120	(주)비원이엠에스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157번길 22-8	055-331-3117	7	7	-
121	주식회사제일응급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대첩로 17	055-688-0129	5	5	-
122	주식회사하트세이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116번길 20	055-744-2119	13	13	-
123	(주)중앙구일일 구급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54	055-237-9195	11	11	-
124	(주)한국에스오 에스구급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호암2길 98	055-649-2339	7	5	2
제주특별자치도		1개소		5	5	-
125	(주)프로텍션메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복로 270 (오동동)	064-755-1339	5	5	-